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나를 위해



30

94
나눔터 2024
Sharing Ground 2024

4월

30



이명박에 의거

국민의 요구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011

30



목차 Contents

| | |
|-----------------------------------|--------|
| 여는 글 | 4 |
| 기획: 30 | |
| 성폭력특별법이 해온 것과 가야할 길 | 이미경 8 |
| ‘보편’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폭력특별법 30년 이후의 과제 | 김혜정 16 |
| ‘또같이’를 시작하며 | 신아 24 |
| 뭔다! 상담소 | 29 |
| 2024 상담통계 | 44 |
| 열린터 다이어리 | |
| N개의 자립 | 유유 50 |
| 생존자의 목소리 | |
| 희생당하지 않는 사랑의 나라 | 공차 54 |
| 무제 | 결 60 |
| 생존자 김지은이 전하는 편지 | 김지은 62 |
| 특별 코너 | |
| 제15회 생존자말하기대회 <말화> 현장 스케치 | 66 |
| 쟁점과 입장 | |
| 딤페이크 성폭력이 그다지 새롭지 않은 이유 | 유량 72 |
| 남성성“들”과 젠더 테러리즘 | 추지현 78 |
| 연대활동 소식 | |
| 나, 너, 우리 모두의 사랑이 이길 때까지 | 도경 84 |
| 본편보다 재미있는 후일담 | |
| 곳곳의 페미니스트 작당모의를 권하며 | 수수 92 |
| 활동가 인생다큐 | |
| 안식년과 복귀 후 새로운 팀에서의 1년 | 얏 98 |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104 |
| 훈훈한 기부 | 110 |

사진 설명.

1993년 국회 앞에 모인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는 날

앞으로 나눔터는 1년에 한 번, 1월 말에서 2월 초에 발행됩니다. 발행주기가 길어진 만큼 전년도 활동의 주요 의제를 <기획> 코너에서 더욱 깊고 넓게 담아내려 합니다. 다른 코너에서는 연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소식과 인간미 넘치는 에피소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나 영화 등 문화 콘텐츠 비평도 하고, 전문가의 외부 기고도 받아보며 더 다채롭게 반성폭력운동의 이슈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생존자의 말하기>와 <열린터 다이어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나눔터의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이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나눔터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상담소의 이름으로 받은 우편물을 열었을 때, 익숙하지 않은 얼굴에 잠시 멈춰서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레 바뀌어서 조금 놀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소에 이런 이미지도 있었구나'하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눔터 개편은 사실 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포맷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발행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활동만큼이나 다채로운 상담소의 면면을 회원분들에게 더 잘 전달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관행적으로 발행하다 보니 일부 목차 간의 성격이 흐려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개편을 준비하며, 상담소가 문을 연 91년에 발간한 창간호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나눔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얇은 종이 문치 가득 상담소의 지난 역사와 발자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눔터>가 단순한 활동 소식지를 넘어 상담소의 모습을 가장 잘 담아낸, 상담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록물이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나눔터가 주는 익숙함은 잃지 않는 선에서 목차를 정돈하고, 디자인에 힘을 주어 새로운 분위기를 내보이는 것으로 개편 방향을 정했습니다.

특히 상담소의 역동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활동가 한 명 한 명 모두 힘 있게 그리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그간 잘 내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퇴행과 역행의 시대에 마냥 힘차고 즐거울 수는 없지만, 힘겨운 순간마다 상담소 활동가들은 서로 기운을 북돋고 결의를 나누며, 때로는 재치 있고 실없는 농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며, 분노와 답답함을 동력으로 승화해 달려왔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형태로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에 소진된 내면을 충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이런 쾌활한 에너지가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마다 뽀아져 나오기를 바라며 이번 호를 준비했습니다.

회원님의 곁에 더 오래 두고 읽고 싶은 소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나눔터 94호의 문을 열어봅시다.

30

기획

30

94호의 기획 주제는 '30'입니다.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수식어를
붙여보겠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또 있습니다.

열림터 개소 30년.

지난 2024년은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된 해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림터가 서른 살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위해 바쁘게 댄 모든 이들의
발자국이 쌓여 30이라는 숫자를 그려낸 건데요.
그 땀막질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면면을
뜯어봅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해온 것과 가야 할 길

기획: 30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우리 상담소의 설립부터 함께한 이미경 이사의 글로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는 '성폭력특별법시행추진특별위원회'가 결성된 배경부터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겪은 활동가입니다. 그가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로 지난 30년을 돌아봅니다.

30년 전, 상담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었던 성폭력특별법

1990년, 상담소 개소를 준비하면서 우리 활동가들은 ‘과연 상담이 들어올까’라는 물음을 갖기도 했다. 당시 성폭력을 다루는 유일한 법이었던 형법 제32장은 ‘정조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며 말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5평 작은 사무실에서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쏟아졌던 상담! 우리는 매년 4~5천 회 상담 전화를 받으며 기존 법이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를 접했다.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직장 상사, 선생님, 친족 등 가해자와의 관계의 특성상 혼란을 겪느라 고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아버지가 강간해도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224조)에 의해 피해자는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어느 날, 멀리 부산에서 전화로 지속 상담을 하던 친족성폭력 피해여성이 더 이상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다며 갑자기 집을 싸 들고 상경해 상담소를 찾아온 일도 있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없었던 때라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 모셔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거리다가 간신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연계하였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들은 결코 현행법 체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한 우리는 가해자의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시발점은 1990년에 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한국여성의전화 쉼터에서 자신의 아내를 인신매매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다. “경찰이 사무실에 난입해 활동가들과 상담원들을 위협하고 상근자 세 명을 경찰서로 데려가 거칠게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 이때 경찰은 구타 남편을 ‘선생님’이라고 대접하는 반면 여성의전화 활동가들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범죄자 취급했다”.¹ 이러한 상황을 겪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시작한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은 1991년에 21년 전 강간법을 살해한 사건을 지원하고 있던 4개 단체를 중심으로, 그해 여름에 성폭력특별법제정위원회(이하 ‘성특위’)로 연대 범위를 넓혔다. 1992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서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선정하면서 성특위는 여성연합 내의 특위 형태로 새롭게 틀을 갖추어갔다. 성특위에서는 현장활동가들과 변호사, 연구자들이 함께 밤샘 작업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했다. 그리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입법부 및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특히 1992년에 발생한 13년간 의붓딸을 성폭력한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성폭력특별법제정 요구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마침, 그해에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겹쳐있어, 정치계에서도 당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그러나 당시 법조인을 비롯한 많은 법학자들은 특별법 형태의 법제정은 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론적인 반대를 했다. 성특위에서는 형법 개정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형법이 다루지 않는 피해자 권리 보장 체계까지 구축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운동 방향을 굳혔다. 입법 공청회에서 한 의원은 아내강간죄 규정을 들어 “이 법은 부인들이 맘 내키면 출근하는 남편의 넥타이를 잡아 경찰서로 가게 하는 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관련 조항은 빠지기도 했다. 그날 국회 공청회의 풍경은 앞으로 반성폭력운동의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절감하게 했다. 우리 활동가들은 상담

사례에 기반 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거리 행진을 하고 언론 기고, 방송출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법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드디어 1993년 12월에 성폭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99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50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기간에 이루어진 셈이다. 우리 활동가들은 이 과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 문제를 제기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여 마침내 그 결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성폭력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 권리를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어지는 가정폭력방지법(1997), 성희롱관련법(1999), 아동청소년성보호법(2000), 성매매방지법(2004)의 제정 운동에 선례가 되었다.

법제정과 동시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는 개정운동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만 하면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리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국회를 통과한 법은 여성계가 청원한 법의 핵심이 빠져있었다. 무엇보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도 없이 형법의 각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에 그쳤고, 형법에서는 여전히 성적자기결정의 죄가 아닌 정조에 관한 죄였다. 친고죄도 고소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을 뿐이었으며 장애인도 신체장애만 해당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법이 통과된 것이다.

우리 활동가들은 법개정과 동시에 개정운동을 시작했다. 1997년 8월에 성폭력특별법 1차 개정을 통해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제도가 신설되고, 13세 미만 성폭력은 가중처벌 및 미친고죄 규정 등의 변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50여차례 법개정이 있었다.² 특히 2011년에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으로 분리되어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이 되었다. 2013년 개정 시에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고, 강간죄의 객체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며, 피해자 법률 조력을 위한



변호인 선임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2018년 #미투운동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보완하는 등 법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혜화역에 모인 수만명의 여성들의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는 외침 덕택에 우리사회는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국가의 책무를 인정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된 영상을 무료로 삭제지원하는 등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이전까지만해도 유포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의 사비를 들여 ‘디지털장의사’를 찾아야했다. 2023년에는 국가기관의 장에게 성폭력 발생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 시 나이, 인지적 발달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등의 피해자 권리 보장제도가 촘촘하게 보완되었다. 이처럼 수습회에 걸친 성폭력특별법 개정의 전과정에 여성운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들이 법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남은 문제들: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 를 판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라!

성폭력특별법 제·개정운동을 통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제도화되고, 성폭력 범죄 전담부 마련, 신뢰관계인, 증인지원관, 피해자 변호사 등 인적자원 구축, 개인정보 보호, 신변안전조치 등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의료비 지원 등 전반적인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은 환영할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과 성폭력 2차 피해 등은 피해자 권리 보장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형법 297조는 아직도 굳건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19개 성폭력상담소의 2022년 강간상당

통계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4,765건의 강간
상담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강간이 2,979건(62.5%)을
차지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강요나 회유, 지위이용, 속임, 그루밍
등에 의한 강간으로 현행법 체계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사례들이다.³ 이미 국제적인 흐름은 동의여부로 가고
있고,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⁴에서도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시한다는
것은 성폭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반성폭력운동의 방향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으로도 이어져야 할 부분이다.

성폭력 피해 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직장, 주변인
등의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과 심리적 고통을 겪는 2차
피해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연구보고서
「성폭력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⁵에는 그간의 여성인권보장 디딤돌·걸림돌로
선정된 307사례 분석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법과 제도적으로는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행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폭행·협박의 최협의설, 양형, 피해자다움과 진술의 신빙성
의심, 역고소 및 절차적 문제 등이 피해자 인권보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수많은 피해자
지원단체, 정부, 국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노력했고 실제적인
변화도 만들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 발생의 근본 요인인 성별 불평등한 사회구조, 낮은
인권의식 등의 개선 없이 가해자 처벌강화 정책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많은 사례들을 통해 보아왔다. 결국,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 상대를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만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반성폭력운동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야성’을 잃지 않고, 여성주의 관점으로 피해자

옆에서 지지와 응원을 할 것이다. 나아가 시민들과 연대해 인식을
바꾸고 실천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1 이현숙·정춘석(1999),
“아내구타추방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연구원, 한울아카데미, 120쪽.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부터 여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해 오다가 피해자들의
사정이 너무 다급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1987년부터 사무실 한쪽 방을 쉼터로
운영해 왔다.

2 김혜정(2024), “성폭력특별법 30년, 법의
변천에 담긴 사회변화의 흐름과 쟁점”,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
상담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24. 12. 9). 12-20쪽
참조. ([https://www.sisters.or.kr/data/
report/343](https://www.sisters.or.kr/data/report/343))

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4),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 183-224쪽.

4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등(2024),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토론회 자료집 참조.

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4), 「성폭력
수사·지판 시민감시 20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연구보고서 참조. ([https://www.sisters.
or.kr/data/report/344](https://www.sisters.or.kr/data/report/344))

성폭력특별법은 30년 동안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가져
왔습니다. 성폭력 대응과 예방의 좌표가 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엄벌주의와 관료적 제도화에 빠지지 않는
반성폭력운동은 어때야 할까요?

보편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폭력특별법 30년 이후의 과제

기획: 30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993년 12월 17일 14대 국회가 가결하고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어느덧 30년이 됐다. 이 법은 중간에 두 개 법으로 갈라졌다.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로 분리 입법된 것이다. 전자는 법무부, 후자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그러나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보면 두 법은 연결되어 있다. 한국 사회 성폭력 대응체계에서 피해자 지지와 가해자 처벌은 뗄 수 없는 두 축이다.

“성폭력특별법 제정하라!” 수많은 피해자, 시민, 여성운동가가 요구했다. 당시 형법 32장은 ‘정조에 관한 죄’였고, 강간죄는 부녀에게만 적용됐다. 말로는 보호지만, 법은 이 부녀가 정조가 있는지 확인하려 드는 장치와 다름없었다. 강간죄는 친고죄였고, 피해자 본인이 6개월 내 고소하지 않으면 안 됐다. 피해자에게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고 종용하던 법적 배경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이런 온통 남성중심적인 법과 사회에 맞서는 요구였다.

시행 이후로 30년, 성폭력특별법과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은 총 50번 정도의 개정을 거쳤다. 어떤 조항이 변경됐는지 정리하고 보면 한줄 한줄에서 당대의 사건, 여론의 일성이 들리는 듯하다. 여성운동단체, 반성폭력운동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들린다. 일부 국회의원의 보수적인 불멘소리와 법원행정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반복되는 ‘신중검토’ 보고서 사이로 현실의 목소리가 외쳐졌다. 친고죄 폐지, 디지털성폭력 법조항 구비, 전반 형량 상향, 성폭력 방지 대책 및 예방 교육 책무, 피해자 불이익 금지, 13세 미만과 장애인 대상 공소시효 배제, 신뢰관계있는 자 동석, 증거보전 특례 등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특별법’은 ‘보편 법 체계는 못 바꾼다’며 변화를 가로막는 자리에서 그 이유로써 내밀어진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성범죄 죄명이 150개다, 촘촘한 편이다,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특별법으로 있다. 이미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 제시카법, 사후치료감호제 이런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¹ ‘사각지대론’은 법이 닿지 않는 성폭력을 조명하고 법이 포섭하는 범죄를 하나씩 추가하며 늘려가는 방식이다. 특별법 역시 ‘사각지대론’에 입각해 제정됐다. 특별법은 기존 법체계의 한계와 정상성에 균열을 낸 징검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 대신 쉽게 포섭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별법이 변경될 때도 13세 미만, 장애인 피해자에게만 먼저 겨우 시도되는 것을 보면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을 특수하고, 취약한, 잔여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을 보인다.²

그럼에도 보수적이고 가부장주의적인 법, 성폭력 정상성이 유지되는 구조를 깨려는 개입과 노력은 계속된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2024년 12월 9일 열린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토론회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우선 세 가지를 꼽아본다.

첫 번째, 동의문제다. 성폭력 범조항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되는지 조건을 걸고 있는데 이를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특별법과 형법 조항이 연동되어 있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는 최협의설을 판례와 학설로 두고 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는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이 조문에 있는 상태지만 해석상의 최협의설이 2023년 10월 대법원 판례로 폐기되었다. 의제강간은 폭행·협박 등 없이도 강간으로 친다는 것인데 13세 미만 피해자 연령 조건이었다가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이는 16세 미만이 아예 성적인 주체나 행위자가 아니라는 규범을 내포하며, 강간죄보다 낮게 처벌된다. 성폭력특별법 14조 불법촬영 관련 조항에서는 ‘의사에 반하여’가 요건으로 있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재생산되는 범죄는 의사를 묻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던 성폭력에 대해서는 폭행과 협박을 따져 묻는 구성요건인 것이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는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한다. 가해자가 장애인 피해당사자나 술과 약물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의사 없이’ 행위를 한 것이 문제인데 피해자가 얼마나 항거불능이었는지 입증하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성폭력은 물리적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70%에 달한다. 따라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당시와 꺼내 말하는 과정, 고발 이후의 피해자 의사표현을 어떻게 들리게하고 공적으로 이를 반영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두 번째, 보호법익이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없이’로 바뀌야 한다는 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법이 보호해야 할 이익이 성적자기결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다혜(2024)는 특별법 30년 토론회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자유주의적인 권리개념만으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³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성적자기결정권을 권리행사 ‘능력’의 문제로 보거나,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사적인 성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권리로 인용하는 장면을 본다. 성폭력이 모두 타인과의 성적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할 때, 개인의 권리/능력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개입으로 법익 구성이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폭력 법의 한편에 ‘성폭속에 관한 죄’가 있고 이 조항 일부는 성폭력에 포함되어 있다. ‘음란’, ‘건전한 공동체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성’ 등이 사회적 법익의 개념들이다. 디지털 성폭력에는 사회적 보호법익과 개인적 보호법익이 혼재된 상태인데, 최근 대법원은 성적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도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에 인격권을 연결했다. 기존의 성폭속, 음란 개념에 균열을 내는 사회적 법익 변경 논의로부터 ‘성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장다혜는 제안한다.

세 번째, 피해자 참여다. 성폭력처벌법과 방지법은 피해자 지지를 하는 정책과 제도를 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증거보전 특례,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이다. 재판절차에



관해서는 2004년 특별법 22조4 1항 증인신문 규칙을 2013년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했다. 피해자 ‘보호’ 제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예컨대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 진정성립 특례조항이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보완 입법은 1년 7개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23년 7월 11일 의결되었는데 증거보전 특례를 활용하도록 하되,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열게 했다. 또 증인신문 장소 특례를 설정하고 안내를 의무화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우선한다고 현재는 결정했지만,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고심하는 과정이었다. 참여권은 보호를 넘어선다. 호랑(2024)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넘어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⁴ 성폭력 형량이 올라가도 법정에서 가해자/피고인 서사만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생겨도 도리어 무력해지는 경험만 크다면, 피해자는 보호대상이 되어 배제된다. 독일은 부대공소제도, 프랑스는 사소제도, 일본은 피해자 참가제도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30년 여정을 보았을 때 중요한 제언은 또 있다. 앞의 세 가지 중점과제가 법으로 따지면 성폭력처벌법에 더 강하게 연루된 문제라면, 성폭력 대응과 예방, 방지정책의 구조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첫 번째는 교육과 예방이다. 성폭력특별법 상 성폭력 교육 및 예방 역할은 여러 개정에서 법에 명시됐다. 1997년 18세 미만 사건 신고의무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유치원 보육시설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결과 제출, 예방 대책 마련, 기관 평가 반영, 민간기업 교육 책무, 장애인 맞춤 교육, 예방조치 기본계획 수립, 점검 결과 평가 반영 등으로 나아갔다. 2021년에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현장점검을 나가는 정책의 근거가 형성되었고 2023년에는 기관장에 의한 사건은 1개월 내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미투운동 당시 여성가족부는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군대 내, 문화예술계 내, 체육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방면의 신고센터 운영,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이라는 변화를 독려했다. 예산을 편성해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에 사후 방문하여 해결 과정의 난점을 듣고 전문가 도움을 지원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다’ 고 말하는 성차별주의적 정부나 정치권이 등장하면 그 예산부터 삭감된다. 가해자 처벌 법정형만 높이고, 양형기준만 높일 것이 아니라, 생활 세계 곳곳에서 성폭력 방지와 대응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안전망이다. 교육과 예방은 앞으로 성폭력 법적 전개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지의 통합적 점검과 시너지다. 반성폭력 활동가가 국회에 찾아가면 그 조항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니 여성가족위원회로, 저 조항은 법무부 소관이니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지 체계 전반을 모르는 ‘처벌법’은 범피해자구조체계 속에서 성폭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형사사법절차를 포기하는 피해자의 지원을 중단하기도 한다. 반면 가해자 처벌체계를 모르는 ‘방지법’은 피해자를 제도화된 지원시설의 입소자로 보고, 중복지원의 대상이 아닌지 의심하는 절차만을 강조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피해자 지지와 가해자 처벌은 한국 사회 성폭력 대응체계의 함께 있는 두 축임을 상기하면서 함께 점검하고

연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 격차가 아닌 지역 내, 지역 간 연대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여성폭력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갑자기 상담소들을 통합하겠다고 ‘응모’ 방식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지역 내 상담소들을 경쟁시키고 불안케 했다. 그러나 현장 활동가들은 갈라지고 불안해하는 대신 모였다. 가정폭력, 성폭력, 이주, 장애, 성매매/성착취, 긴급전화 활동가들 420명은 2024년 7월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통폐합, 현장에서 마주하는 여러 쟁점, 활동 자율성과 여성주의적 가치지향,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시대 위기와 도전을 토론했다.

인구가 줄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앙 부처는 국가 책임은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예산 부담을 넘기고 있다. 지역 간에 경쟁하게 하고, 그 상황을 지역 소멸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서울 중심, 중앙정부 중심, 전문가 중심을 넘어 지역들이 유기적으로 탄력있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살아있는 피해자와 지원자들의 이야기로, 여전히 성폭력의 구조를 부수지 못하는 체념과 낙담을 뛰어넘어, 좁은 자리를 넘어 성적 낙인을 부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도다.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으로.

- | | |
|---|--|
| <p>1 2023년 2월 8일 대정부질의,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한 답변 중</p> | <p>3 장다혜(2024), ‘국가는 무엇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가: 성폭력 법의 위치와 방향’,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4.12.9</p> |
| <p>2 서두의 논의는 김혜정(2024), ‘성폭력특별법 30년, 법의 변천에 담긴 사회변화의 흐름과 쟁점’,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4.12.9</p> | <p>4 호랑(2024), “‘피해자 보호’의 의미와 한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조건 상상하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4.12.9</p> |

‘또 같이’ 를 시작 하며

신아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열림터는 그동안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며 순간순간 ‘보호’시설의 한계를 마주해 왔습니다.

지금의 시설 모델은 퇴소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해로 인해 여러 자원이 부족한 생존자에게는 자립(自立)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시간과 공간 역시 마땅치 않은 데도요. 그래서 30년을 맞아 ‘스스로 힘으로 서는 것’에 초점을 맞춘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과 자립 사이의 중간집을 만드는 일입니다.

2024년, 상담소의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가 개소한 지 30년을 맞았다. 열림터의 의미는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열려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하는 터”로,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생존자의 치유회복과 자립이라는 운영 목표를 갖고 있다. 열림터가 문을 연 1994년은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된 해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난 30년은 열림터가 생존자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함께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생활인과 활동가들이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제도를 실행해 온 시간이기도 한 셈이다.

그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입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미션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열림터는 몇 년 전부터 ‘쉼터 모델’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주거 및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생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와 열림터에서 생활한 생존자들 모두 쉼터가 가진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¹ 생활인들은 열림터가 있어서 집을 나올 수 있었지만, 열림터에서 보내는 1년여의 빠듯한 시간 동안 자신의 피해를 돌아보고 사건을 해결하는 동시에 퇴소 이후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주어지는 자립지원금 500만 원은 만 19세 미만 입소하여 1년의 기간을 머문 후 19세 이상의 나이에 퇴소한 이에게만 주어지고 있어,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6.3%만이 이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다.² 쉼터는 24시간으로 운영되어 누군가의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지만, ‘보호’를 위한 규칙은 생활인에게도 활동가에게도 때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한 의료, 문화생활, 직업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존자 개별 일상의 다양성과 상충되기도 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비밀 시설이기에 생활인의 일상에도 비밀이 늘어나고 1인 1실이 보장되지 않아 공동체 생활에서의 갈등이 더 커질 때도 있다.

이런 쉼터의 한계에 더하여, 청년이거나 청소년이 대부분인 쉼터 퇴소 생존자들은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겪는 동시에 피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렵게 자립하고 있다. 열림터 안에서 점점 고민이 깊어지던 즈음, 한 후원자분께서 생존자들의 자립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을 해주셨고 이를 마중물 삼아 열림터가 ‘또같이’를 열게 되었다.

집을 떠나도 갈 수 있는 곳, 헤매도 괜찮은 시간

‘또같이’는 말 그대로 생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 공간, ‘집’이다. ‘또같이’를 만들기로 결정한 후 몇 개월간, 열림터와 상담소 활동가들은 또우리 인터뷰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따뜻하고 환한 분위기에 하늘이 보이는, 평범하게 불 켜진 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청소년, 대학 비진학 청년,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운영했던 기관과 단체들을 만나 자문을 구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2024년 11월이고 내년 1월이면 ‘또같이’에 입주자가 시작될 것이다.

입주자들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주한다. ‘또같이’에는 각자의 방과 주방, 거실을 비롯한 공용 공간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또같이’ 구성원들은 매월 생활에 들어가는 공동 비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지출한다. 설거지, 청소와 물품 구입 등 살림 전반을 이야기하고 실행하는 것도 ‘또같이’ 입주자들이다. 그들이 같이 살 사람을 직접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열림터는 ‘또같이’에 들어온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돌보는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열림터 활동가들은 한 발 떨어진 옆에서 이

생활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입주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만으로 주거와 생활의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될까? 자립함에 들어온 이가 여러 이유로 잠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소득이 불안정하면 공동생활비용을 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거나, 함께 사는 이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결국 퇴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같이’ 입주자들은 이러한 불안을 덜어낼 수 있다. 머무는 1년 동안 매월 25만 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공간만으로는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기본소득만으로 살기에 25만 원이라는 액수는 충분하지 않지만, 마음이 버거워 일을 잠시 쉬기로 한 이가 공동생활비를 내고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남는 정도는 된다. 월급이 빠듯했던 이는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만 했던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뭔가를 배우거나 저축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돈을 쓸 수도 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데 덜 망설일 수 있고, ‘또같이’ 생활에 자신의 몫을 낼 수 있기에 ‘땀땀함’을 지킬 수 있다.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정해진 것도 증빙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철학을 가진 제도이다.

누군가는 ‘주거 공간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으니 그 외의 비용은 일을 해서 마련하는 것이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혼자서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밀려 일을 찾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자립이어야 할까? 자립에도 여유와 유예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해낼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뛰어난 소설가였던 버지니아 울프 역시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자기만의 방과 돈’이라는 기반을 말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열림터를 거쳐 간 생존자들은 ‘관계’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어려움이 생길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요즘 괜찮은지 물어봐 주는 사람 말이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지켜봐 주는 따뜻한 시선의 힘을 떠올려보자. 쉼터에 입소했던

성폭력생존자들은 피해로 인해 가족이나 일터, 주변인 같은 주요 사회적인 관계와 단절되곤 한다. 안정적인 공간과 일정한 소득, 지지하는 관계가 있는 ‘또같이’는 이러한 생존자들에게 비로소 마련된 출발선 같은 것 아닐까.

‘또같이’라는 새로운 주거·자립 기반 위에서 생존자들이 어떤 시간을 만들어 갈지 궁금하다. 생계에 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고 마음 깊숙이 담아뒀던 것을 꺼내 보는, 호기심을 발휘해 보는, 실수해 보니 분명해지는, 잠깐 쉬었더니 힘이 나는, 자립을 위한 1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생활인의 자립 문제 앞에서 조바심이 나곤 하는 열린터 활동가들도 한시름 놓고 이들의 시간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란다.

1

나눔터 93호 “성폭력 피해자 쉼터, 새로운 함께 살기를 찾아서” 참고

2

서울신문, “허울뿐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6년간 61명만 받았다” (검색일 2024.11.13.)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7/16/202407160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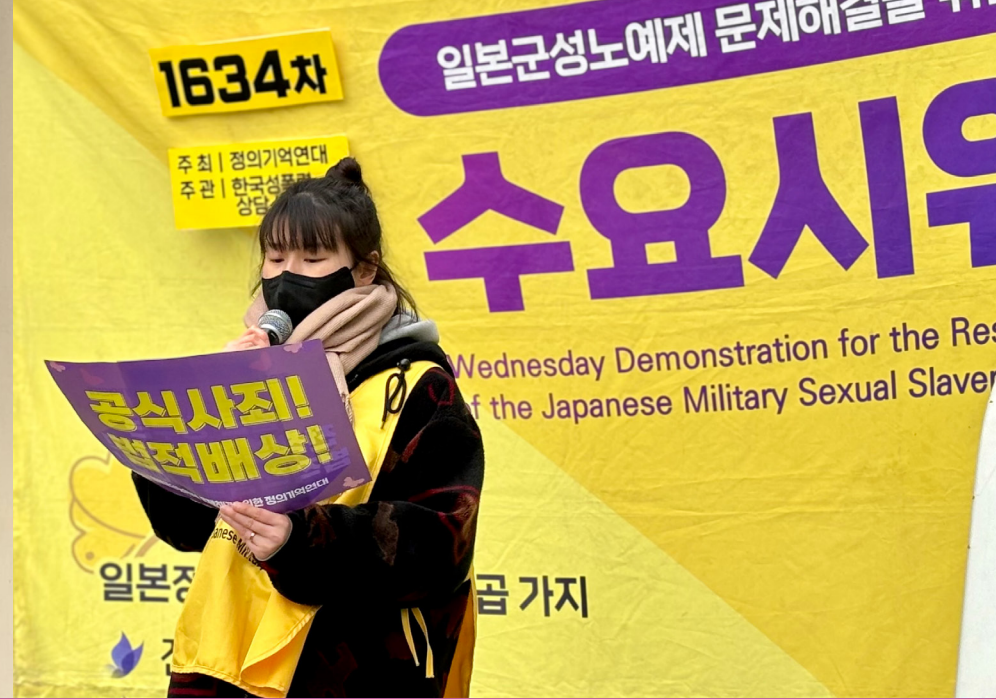
뵈니다!

상담소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22대 총선에 대응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혐오를 ‘폭주하는 남성성’으로 이름짓고, UN CEDAW 한국 정부 심의에 참여해 후퇴하는 성평등 정치의 현주소를 알리고,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경험을 함께 마주한 해였습니다.



Women on Web과 함께하는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상영회



제163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억의 이어말하기〉



12일
Women on Web과 함께하는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상영회

30일
제33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1월 29일~2월 7일
로스쿨 동계 공익법무실습



1일~3일
2024 체제전환운동 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7일
제163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억의 이어말하기〉

23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2월 15일~4월 11일
2024 총선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페미니스트 공약지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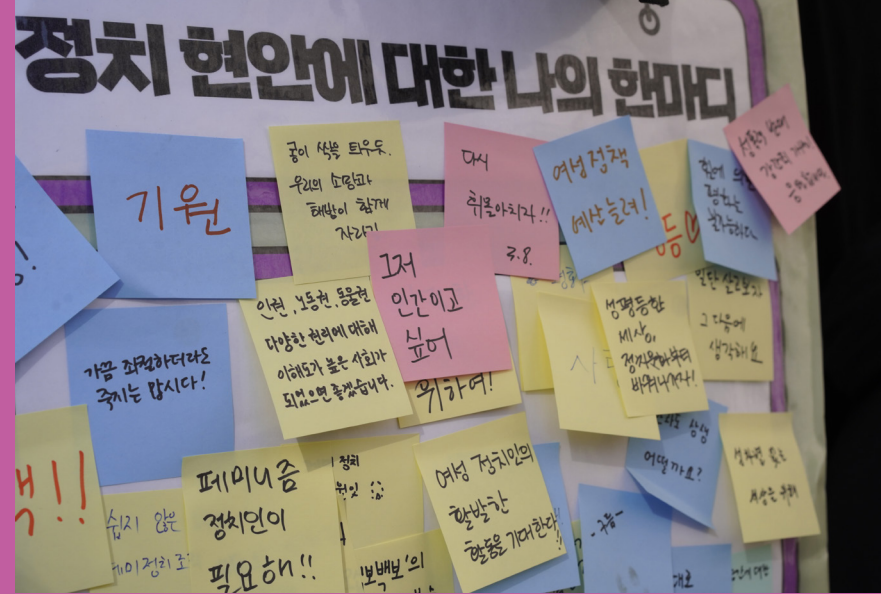
2024 총선 대응 활동

24일

2024 총선 대응 <페미니즘 정치 특강:
윤석열 정부 이후 젠더 정세>

29일

2024 총선 대응 페미니스트 정치
토크쇼 <온더그라운드: '대안우파'의
출현과 도래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8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8일

2023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발표

14일

<민주당 위성정당 지지 비판과
체제전환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 긴급 토론회> 토론 참여

21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함께하는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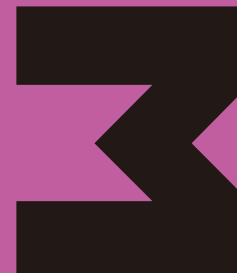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25일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김용원,
이총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

27일

총선정책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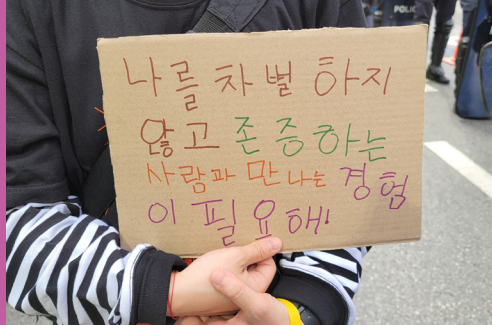




2024 회원놀이터
〈4주 완성!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2024 국제교류협력 - UN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현지 로비



제23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전국 결의대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2일

[#CALL22nd 총선 캠페인]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할 우리 동네 국회의원 찾기!오픈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릴레이 북토크 〈평등 픽! 이 주의 도서〉 1차 -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

6일-27일

2024 회원놀이터 〈4주 완성!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11일

22대 총선 소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들이

13일

세월호참사 10주기 4.16 기억문화제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릴레이 북토크 〈평등 픽! 이 주의 도서〉 2차 - 일하는 여성들의 딜레마, 평등으로 전망 찾기

19일-20일

제23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전국 결의대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23일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기자회견”

3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릴레이 북토크 〈평등 픽! 이 주의 도서〉 3차 - 그림자 속 온실, 이주민과 평등의 단서

4일

회원소모임 〈달리자! 페미〉의 제24회 여성마라톤대회 완주

10일-21일

2024 국제교류협력 - UN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현지 로비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릴레이 북토크 〈평등 픽! 이 주의 도서〉 4차 - 빈곤, 취약한 삶들과 마주한다는 것

17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평가 토론회 발제 참여

17일

2024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선포 기자회견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28일

공공교통 다크투어 〈구의역 참사 8주기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재해 참사 현장 함께 돌아보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발언

30일

2024 성평등공론장 포럼 〈잇-다 “다시”〉

5월 2일-7월 4일

2024 성폭력피해경험자 치유회복을 위한 여성주의집단상담: 상처를 힘으로 전환하는 목소리 깨우기

4

5



서울퀴어퍼레이드
〈Yes, Queer!〉



기자간담회 〈2004년에서 2024년으로: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삶에서, 피해자의 눈으로,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여성폭력대응현장활동가 전국 워크숍 〈우리, 연결된 큰 걸음〉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 〈Yes, Queer!〉

1일

성평등도서관 공동행동 기자회견
“성평등 도서는 도서관으로, 차별과 혐오는 지옥으로!”

1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 규탄 긴급행동 〈팔레스타인에 패방을: 우리의 해방은 연결돼있다〉

3일~5일

2024 상근활동가 워크숍

10일

CEDAW 최종견해 이행 촉구 토론회

13일

기자간담회 〈2004년에서 2024년으로: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삶에서, 피해자의 눈으로,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14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21일~22일

전국차별금지법제정운동활동가대회 〈평등 속으로〉

22일

회원소모임 〈수영하는 사람들〉의 2024 한강크로스스위밍챌린지 참여

6월 11일~7월 2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북클럽 '폭주하는 남성성'의 현재들

2일~3일

여성폭력대응현장활동가 전국 워크숍 〈우리, 연결된 큰 걸음〉

2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11일

기자회견 및 국민감사 청구 “지난 20년동안 WHO 필수약품인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천년만년 미루는 식약처에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11일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15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모임넷X위민온웹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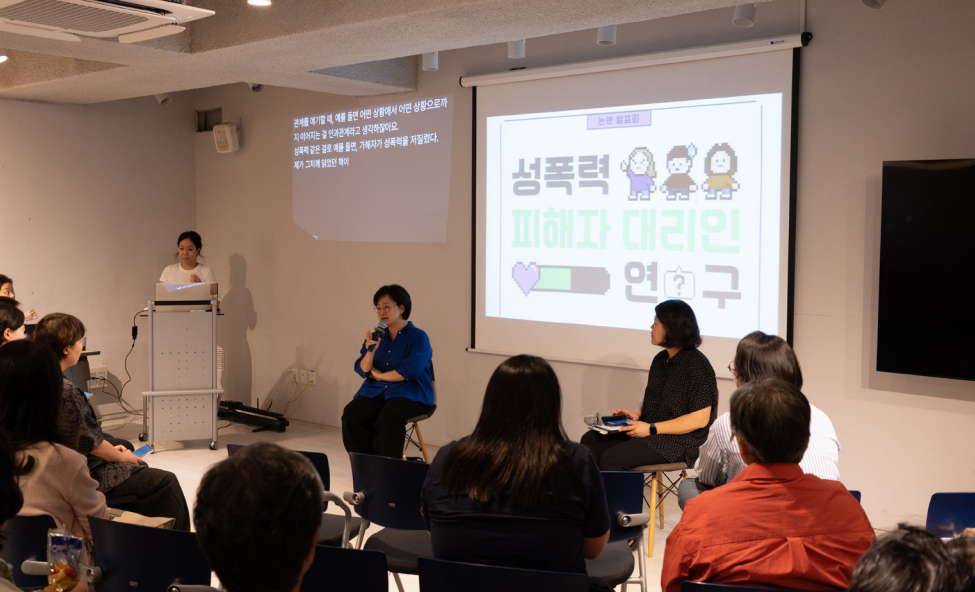
16일

모임넷XWomen Help Women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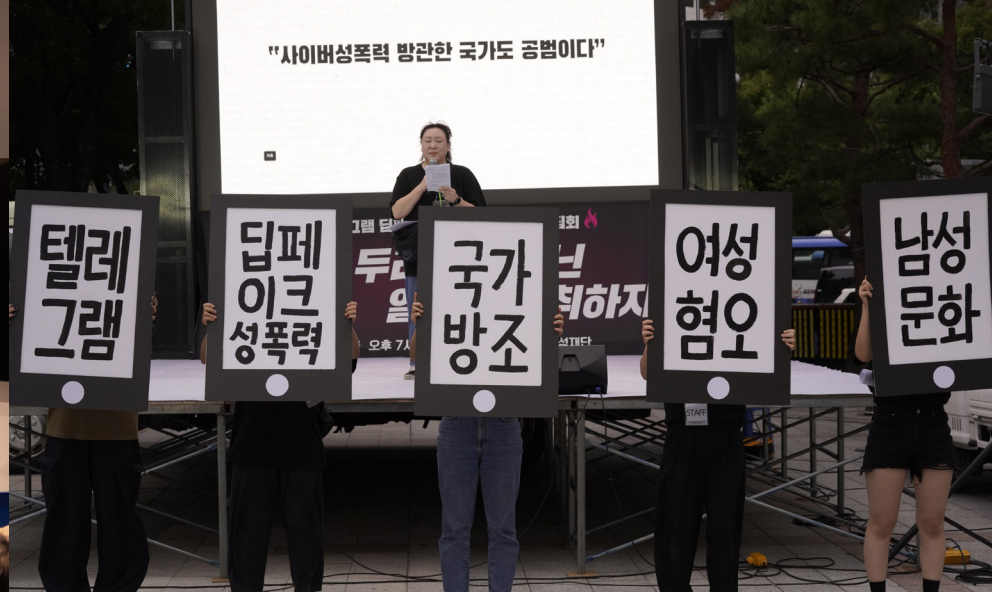
22일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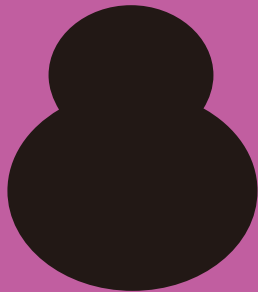




권김현영 박사 논문 발표회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연구〉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6일-14일

로스쿨 하계 공익법무실습

8일

권김현영 박사 논문 발표회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연구〉

27일

〈폭주하는 남성성〉 시리즈토크 1차 - 여성을 죽여서 '화풀이'하는 남성들

28일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29일

〈폭주하는 남성성〉 시리즈토크 2차 - 여성의 고통을 팔아 돈을 버는 남성들

4일

기자회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자격 없다. 스스로 사퇴하라!”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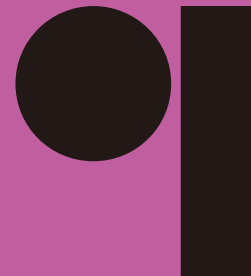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7일

907 기후정의행진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10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 집담회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



11일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13일-14일

열린터 30주년 홈커밍데이

19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 참여

25일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26일

반성매대인권행동 이름 20주년 토론회 | 불처벌의 정치학 〈여자가 원했다는 논리〉 발제 참여

30일

5.18 성폭력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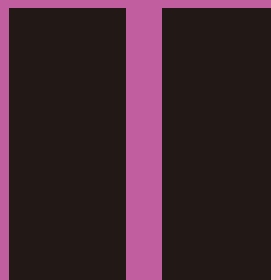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범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담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 5일**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의 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 10일**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 “동성혼
법제화! 사랑이 이길 때까지”
- 14일**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범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담회〉
- 19일**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 행진
- 22일**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 9일**
전태일 정신 ‘평등’을 향해, 가자!
체제전환! 사전집회
- 13일~14일**
2024 여성회의: 페미니즘∞기후정의
〈연결하고 연대하기〉
- 18일**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 23일**
제15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발화〉



2024 한해보내기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 윤석열 탄핵 집회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 윤석열 탄핵 집회



4일~진행중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 윤석열 탄핵 집회

6일

2024 한해보내기

9일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사단
20주년 기념 토론회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10일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6일

청소년 주거권 북토크쇼 〈집, 거리,
시설, 그리고 다시 "집"〉

2024 상담 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4년까지 33년 동안 59,965명에게 92,192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1,49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당해 신규 상담인원인 성폭력상담명수(B)는 560명입니다. 2019년부터 상담지원의 내실화를 지향하며 2022년까지 상담명수(A) 및 성폭력상담명수(B)가 감소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기존 상담인원을 포함한 지속지원 포함 상담명수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데, 2024년의 지속지원을 포함한 성폭력상담명수는 658명입니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과, 3월8일 세계 여성의날에 업로드될 홈페이지(www.sisters.or.kr)의 상담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연도별 상담현황

| 연도 | 전체 상담건수 | 상담명수 (A) | 성폭력 상담명수 (B) | 지속지원 포함 성폭력 상담명수 | 성폭력 상담비율 (B/A) |
|-----------------------|---------|----------|--------------|------------------|----------------|
| (1991년~2021년 상담통계 종락) | | | | | |
| 2021 | 1,415건 | 595명 | 537명 | 639명 | 90.3% |
| 2022 | 1,387건 | 537명 | 478명 | 562명 | 89.0% |
| 2023 | 1,349건 | 608명 | 557명 | 655명 | 91.6% |
| 2024 | 1,492건 | 611명 | 560명 | 658명 | 91.7% |
| 계 | 92,192건 | 59,965명 | 50,687명 | 3,294명 | 84.5% |

[표1] 연도별 상담현황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 | | |
|---------|--|-------|
| 여성 피해자 | | 93.0% |
| 남성 피해자 | | 5.4% |
| 성인 피해자 | | 63.2% |
| 청소년 피해자 | | 14.3% |

성폭력 상담(560명) 중 521명(93.0%)은 여성 피해자이며, 이는 상담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유사합니다.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5.4%입니다. 남성 피해자는 2021년(5.2%)부터 2023년(8.6%)까지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30명(5.4%)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여성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성인이며 60.5%인데, 지난해(65.7%)보다는 줄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13.2%으로 지난해(8.4%)보다 1.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 | |
|-----------|-------|
| 남성 가해자 | 88.0% |
| 성인 남성 가해자 | 64.8% |

가해자 현황의 경우 남성 가해자가 493명(88%)으로 지난해(84.4%)보다 증가했고, 반면 여성 가해자의 비율은 지난해(3.4%)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남성 가해자 중 성인의 비중은 64.8%로 지난해(67.1%)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남성의 비율은 8.6%로 지난해(5.9%)보다 증가했고, 청소년 가해자 전체의 비율도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또한 고령 가해자도 23명(4.1%)으로 지난해 (2.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 | |
|--------------|-------|
| 본인 상담 | 69.3% |
| 본인·대리인 동반 상담 | 2.0% |
| 대리인 상담 | 28.8% |

피해자 본인의 상담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70.4%로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하였지만, 2024년에는 388명(69.3%)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대리인이 동석한 비율은 2.0%로 지난해인 1.1%에 비해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대리인 상담은 161명(28.8%)으로 지난해와 유사하며, 대리인 중에서는 가족·친인척의 비율이 17.0%로 가장 높고, 대리인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강간·강제추행 피해多, 성희롱 줄고 카메라이용촬영 증가.

| | |
|-----------------------------|-------|
|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 | 33.2% |
| 강제추행 피해 | 36.1% |
| 카메라이용촬영 피해 (유포, 딥페이크 포함) | 9.3% |

전체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으로 전체 피해의 36.1%입니다. 두 번째는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로 33.2%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피해 유형은 카메라이용촬영(촬영, 유포, 유포협박 등 포함)이며 9.3%로 지난해(5.6%)보다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세 번째로 높은 피해 유형이었던 성희롱(지난해 10.1%)의 경우 6.6%로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볼 경우 성인과 어린이가 피해자의 경우 강제추행이 높게 나타났고(23.2%, 4.3%), 청소년과 고령의 경우 강간 피해와 강제추행 피해의 비율이 동일합니다(5.5%, 0.5%).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 | |
|---------------------|-------|
| 성인 가해자에 의한 강간 피해 | 22.5% |
| 성인 가해자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 25.2% |
|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 3.8% |

모든 피해유형에서 성인 가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가해자의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가 143명(25.5%)로 가장 높지만, 강제추행도 141명(25.2%)으로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외의 연령의 경우는 모두 강제추행이 해당 연령 중 가장 높으며 청소년 가해자 21명(3.8%), 고령 가해자 13명(2.3%)입니다.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 | |
|----------------|--|-------|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 | 82.0% |
| 친족 및 인척에 의한 피해 | | 15.0% |
| 직장에서의 피해 | | 20.7% |

대다수의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2024년에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2.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직장 내 피해가 20.7%로 가장 높고 친족 및 인척에 의한 피해가 15.0%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경우 직장 피해가 20.0%, 친족 및 인척에 의한 피해가 11.4%로 관계 유형별 합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일어나는 피해가 10명(1.8%)로 가장 높았고, 친족 및 인척에 의한 피해와 온라인 피해가 9명(1.6%)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8. 피해자 지원내용

| | | |
|--------|--|------|
| 심리정서지원 | | 774건 |
| 법적지원 | | 760건 |

지속지원을 포함하여 2024년에 이루어진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1,436을 기준으로 중복 집계한 지원 건수는 2,424입니다. 면접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는 상담을 진행하는 심리·정서 지원이 774건(31.9%)으로 가장 많고, 법적지원이 760건(31.4%)의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입니다. 법적지원은 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 법적과정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이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률지원은 22.6%로 세 번째였는데,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법적 정보나 과정을 안내하는 경우 법적지원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일지작성 방식을 변경하면서 법적지원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6개월의 자립

또우리 유유

상담소와 열린터에서는 쉼터에 머물렀던 전 생활인을 '또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만나요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립'이란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나온다.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상태는 어떤 결과? 어떤 지 되묻고 싶어지는 문장이다. 이 문장이 내게 따갑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온전히 내 돈으로 퇴소한 게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최대한 오래 쉼터에 있으면서 내가 번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나갔어야 했는데, 6개월 만에 쉼터 힘들다고 뛰쳐나간 내가 창피하게 느껴졌다.

다른 생활인들이 퇴소해서 어떤 삶의 형태를 꾸리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다. 자립이라면 당연히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해왔기에 꼭 보증금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퇴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세 문제로 열림터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니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공동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열림터에서 나포함 9명과 단체생활 하느라 힘들었는데 퇴소하고 나서까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다. 결국 보다 못한 친구가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월세가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이처럼 공동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점도 스스로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퇴소 초기에는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원하던 대로 혼자 살게 됐다고만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쪽 혼자 살고 싶었고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 어쨌든 혼자 살게 됐으니까 꿈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 꿈을 멋지게 이룬 것 같지 않아서 짝꿍했다. 그 후로 '자립'이라는 단어는 신발 밑창에 달라붙은 껌처럼 끈끈하고 성가신 단어이자, 언젠가는 도달해야만 할 것 같은 결승점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립을 하고 싶었나 보다. 다른 또우리들과 비교해서, 내 또래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자립을 했는지 계산적인 수치로 재보고 있었다. 하지만 자립을 꼭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나? 생각해 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엔 실내온도가 33도까지 치솟는데, 집에 나 혼자니까 아무 것도 안 입고 있을 수 있다. 집에 있을 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 정말 살 것 같다. 가해자와 함께 살 땐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꿀 때가 잦았는데, 혼자 살고 난 이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통금이 있었을 땐 밤새

놓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는 편이고 아쉽다는 생각도 안 든다. 내가 원하면 밤을 새든, 며칠을 집에 안 들어가든 괜찮으니까 오히려 적당히 놓고 집에 가게 된다. 결국 내가 원했던 자립은 가해자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 점에서 난 성공적인 자립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됐다. 나의 자립이 이런 모양이라면 다른 또우리들은 또 다르겠지. 또우리가 10명이면 10개의 자립의 형태가 있을 거다.

그럼에도 또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예상하듯 돈이다.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인간관계가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립될 수 있다. 여기에 돈마저 부족하다면 더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자립하기가 매우 힘들다. 나 같은 경우는 열림터에 들어왔을 때 직업도, 돈도 없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립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 않았었다. 생활인이 된 이후 돈을 벌게 되어서야 자립을 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열림터에서 나와 자립을 했더라도 언제든 돈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 꾸준한 수입이 없다면 불안해진다. 이건 아마 내가 또우리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고민이라고 생각되기에 답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연결감이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나와 연결된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도움을 청해볼 수도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날 수 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돈이 있어도 연결감이 없다면 사는 게 좀 삭막하고 외롭다. 특히 나 같은 또우리는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연결감을 가질 수 있는 누군가, 혹은 집단이 있다면 삶이 조금은 더 살만해 질 것이다. 느슨한 연결감이라도 좋다.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많은 걸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앞의 모든 것들을 뒤집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생활인들과 또우리들이 자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길 바란다. 나도 한 때 자립에 집착했던 사람이지만 인간은 어차피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좋은 삶든 기대어 살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마음이 더

편해졌다. 자립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또우리가 있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도움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다. 가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친 순간부터 우린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한 것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열림터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열림터에서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준 덕분에 집에서 나올 수 있었고, 퇴소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열림터가 있었기에 꿈에 그리던 혼자살기를 시작해볼 수 있었다. 지금 이 글도 열림터에서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줬기에 쓸 수 있었다. 기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때 그걸 알게 해 준 열림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늘 열림터와 연결되어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생존자 생애 회고록 나의 사랑의 나라

공차

좋은 일을 잘 찾는 사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20년을 넘도록 사랑이란 무엇인지 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들은 여러 날들의 기억은 삼십대가 된 저를 아직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13년을 생존 중인 친족성폭력 생존자이고, 스티싱 2년차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성희롱이나 폭력을 참 많이 참아왔는데,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공적으로 내고 법원으로부터 부당함을 인정받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승리를 기념하고자, 저의 생존 일기를 써 보려고 합니다. 이 일기가 활동가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여러 사람에게 성폭력 생존자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른 성폭력 생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아이가 많은 집의 맏이이자,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데다 두 분의 성격도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싸움으로 접시가 깨지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조용할 날 없던 집안이 조금씩 정상이 된 건 제가 12살이 된 즈음입니다. 12살부터 15살 때까지 4년간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 가며 저를 성추행하는 동안, 저희 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왜 4년이나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닌 데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다 사랑해서 미리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아빠의 말, 나만 참으면 평화로울 것 같은 상황, 용기 내서 엄마에게 말해 보았지만 가슴 만져 본 것 정도는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간 일, 맨날 혼나기만 하다가 처음 받아 보는 관심, 지금 일어나는 이 일(성폭력)이 뭔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점...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될 테지만, 저는 아빠의 성폭력이 끝난 15살로부터 10년이 지난 25살 때에도 제 탓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17살이 되던 해의 여름방학에, 드디어 4년간 제게 일어났던 일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이

사실인지 묻고도 일주일이나 아버지를 집에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사회 경력도 없는 사십 대 주부에, 체면 눈치도 많이 보고 겁도 많은 사람이라 아버지를 쫓아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쫓겨났고, 저는 고소와 정신과 치료를 모두 받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다른 사람의 눈과 저의 앞날, 어린 동생들이 받을 충격을 이유로 한 반대 때문에 신고와 치료를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10대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의지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 집안을 어렵게 만들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 저를 싫어하는 동생들을 피해서 저는 20살이 되고부터 거의 내내 혼자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피해 당시보다 더 힘든 시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연애나 결혼 등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렵듯하게나마 깨닫게 된 고등학생 때이고, 하나는 스무 살에 대학교에서 처음 이성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는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면 꺼림칙해 할 것이며, 이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랐었습니다. 이후 종종 사랑이라는 말에 ‘사랑해서 가르쳐 주려고 한다(만진다)’는 옛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의 시기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일어난 일을 알까 봐, 혹은 제가 어딘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늘 책만 보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끼리 편하게 하는 가족 이야기도, 명절 계획 이야기도, 왜 계속 돈을 벌어가며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저에게는 있는 그대로도 지어내서도 답하기 너무 어렵게 느껴졌기에, 가족이 없어서 의지할 친구가 더욱 간절했는데도 늘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저를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성폭력

사례집이나 심리상담, 치료 관련 책들을 스스로 읽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사이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조금 생겼고 학교도 졸업하고 여러 일에서 재능과 흥미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시원에서 친구의 자취방, 누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취방에서 테라스가 있는 지금의 원룸까지 집도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8살에 저는 또다시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그중에서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으로 임신과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무척 똑똑한 편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훨씬 더 가벼운 일들까지 떠올려 보자면 왜 20살이 넘은 제게 어느 날 갑자기 외삼촌은 뽀뽀를 하고 싶다고 말한 걸까요. 엄마는 왜 그걸 얘기해도 그냥 술 취해서 실수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걸까요. 왜 20살이 갓 된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같이 바다 여행을 가자고 말한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혹시 제 얼굴 때문인지, 저도 모르는 제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타겟이 될 만한) 점이 있는 건지, 옷차림 때문인지 정말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순해 보여서 그런가 싶던 때는 타투를 하고 세 보이는 스타일을 시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투나 표정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옷차림도 노출이 거의 없도록 바꿔보기도 했지만 정말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저 때문이 아니니까요.

정말 많이 돌고 돌아서 드디어 이 모든 게 저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티가 나지 않도록, 평범하고 잘 자란 정상적인 사람(그게 뭔지 저도 모르겠지만)처럼 보이고자 아무 티도 날 일 없도록 성폭력 관련 담론을 피해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도 성범죄자의 자식이자 성범죄자의 피해자라는 이중 낙인,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두렵지 않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소송을 계기로 제가 아닌 다른 생존자들의 관례,

이야기, 활동을 접하면서 제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 특히 공론화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참고가 되는 선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책을 멈출 수 있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사건 속의 생존자분들이 제 앞에서 계시다면, 저는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싶을 테니까요.

이 일이 우리의 탓이 아니라면, 누구의 탓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앞으로의 제 삶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친족 성폭력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어도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생기고, 원치 않게 성폭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고심 끝에 낙태를 선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생계나 여러 이유로 생존자가 더 빨리 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고, 자립하더라도 원가족의 가해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등 취약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런 가족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기까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피하면서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 위험한 인간관계를 골라 수용하며 착취당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또 심리적인 고민, 불안으로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이어 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성폭력 긴급 전화를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이나 스텔싱 같이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사건의 경우 반력을 당하기도 하며(제가 겪은 일로, 저는 상담 반력을 받고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지만 기록도 제대로 남지 않는 병원에서, 가해자 남성의 동의를 구걸해 의료진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들어가며 낙태 시술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 몇 십 년 전에 비하면 느리게 나아지고 있지만, 이처럼 아직 턱없이 제도와 관심이 부족한 게 첫 번째 탓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가해자의 탓입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저의 친족성폭력 가해자는 ‘사랑해서’, 저에게 뽀뽀하고 싶었던 외삼촌은 ‘네가 착하고 예뻐서’, 스텔싱 가해자는 ‘설레서’ 그랬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말하거나 사랑을 연상시키는 이들의 말이

제 상처에 굶은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따갑고 쓰라린 것은 이것이 사랑의 탈을 쓴 비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히 사랑이라는 귀한 표현으로 사랑 때문이라 자신도 어쩔 수 없었으니 죄가 없다는 말을 돌려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걸 듣고 평생 사랑을 두려워하게 될 피해자의 마음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감히 저런 말을 진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20년을 넘도록 사랑이란 무엇인지 답을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가짜라는 것은 아주 잘 압니다.

소송이 끝났고, 저는 이겼습니다. 가해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겠지요. 그러면 여러 신문에 제 사건 판결문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누군가 또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일 겪게 된다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해자의 죄를 묻고, 피해를 보상받기는 데 제가 남긴 선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동의 없이 콘돔을 빼면 이만큼 처벌받는다는 걸 널리 알려져 범죄 예방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도움이 된 판례와 제도들도 누군가가 이런 마음으로 남겨 준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는 사랑의 나라에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포기한 생명에 대해 언제까지나 미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 때처럼 마음속으로 작은 돌을 하나 올려 봅니다.

무제

결

실제 나의 성격은 꽤나 포악했으나 그에 맞지 않게 신체조건이 열악했고, 외모와 인상은 순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친절에는 친절 그리고 시비에는 시비로 맞대응하며 자라나 2007년쯤 친구들은 나를, 받은 대로 갚아주는 ‘함무라비너’라 칭했다. 사기당한 친구를 대신해 환불을 받아오거나, 만취해 행패를 부리는 부친을 집에서 내쫓거나, 새치기하는 업체들을 붙잡아 저 멀리 보내기를 반복하며 살아온 내게 가장 큰 시련이란 고작 목소리 데시벨이 낮아 여러 번 말해야 하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시련이란 무엇인가. 어째서 강철같은 ‘함무라비너’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2시간 내내 웅졸한 입술을 뺨꿈겨려 소리치지 못했는가. 그러고는 생각했다. 아, 내가 혼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덩치만 컸더라면... 슬프게도 단신의 몸으로는 그 무엇도 제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정신과 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인생에서 좋은 경험 하나 했다고 생각해” 나는 이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 그에게도 찾아오길 바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꿀밤이라도 먹이고 싶었다. 다섯 손가락에 모두 반지를 끼고 가장 아픈 꿀밤을 때릴 수만 있다면 내 속이 다 풀릴 것만 같았다. 대체 내 고요했던 일상에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뺨을 찰싹 때리고도 싶었다. 하지만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탄원서라는 이름의 활자뿐이었고 울분을 담은 활자 싸움은 마흔 장을 돌파했다. 이 정도의 양이면 가해자에게 사이버 꿀밤 정도는 한 대 먹였으리라 생각하며 1년이 넘는 시간을 사건에 몰두했다.

그럼에도 이 끈질긴 싸움은 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되었고 지독하게도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깨닫게 되는 무언가가 있으니 의사의 말대로 나는 좋은 경험을 한 것일까 또 한 번 답이 없는 생각을 해본다. 혼자 있지 않았더라도 나는 용기 내 신고할 수 있었고 덩치가 작은 단신의 몸이더라도 작은 입술을 움직여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었다. 이제는 가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상상이 아닌, 민사 소송 합의금 일부를 기부하는 상상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싸움을 함께해 준 많은 여성들에게 승소를 선물하는 상상을 하며 잠에 들려 한다.

생존자 김지은이

전하는 편지

김지은

안녕하세요, 상담소 회원 김지은입니다. 2020년 ‘한해를 보내며 연말 편지’와 2022년 ‘차별금지법 글’로 인사드리고, 다시 2년여 만에 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보통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기술을 배우고,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오늘도 또다시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투를 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만연한 폭력과 차별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도움을 구하였으나 외면당했던 정치권 조직에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처음으로 “도와줄게”라고 응답해준 선배가 있었고 이후 더 용기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투 이후 이제 더는 제 눈앞에 가해자의 범죄는 없습니다.

저의 두 번째 말하기는 <김지은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때의 마음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대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었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말하기였습니다.

이후 책이 대만에서 번역되어 발간됐을 때 대만의 많은 시민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미투,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 그리고 <김지은입니다> 책을 구매하여 정치권에 보내 각성을 촉구하는 등의 우리나라 연대자들의 모습에 감명받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미투의 강렬한 힘에 영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기억이지만, 한국의 미투운동은 여성인권승리의 역사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직장, 학교 등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독일 등의 성폭력 생존자들과 만나 제가 경험한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받은 도움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딘가에서 나누며 도움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견고한 힘을 가진 정치권의 힘은 여전히 소수의 말하기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에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고발 이후 저는 충남도청에서 면직 통보를 받고, 저의 조력자는 국회에서 내쫓겼으며, <김지은입니다> 책은 공공도서관에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불평등한 노동환경과 여성인권 등 정치 현실에 대해 <몰락의 시간> 이라는 책을 쓴 조력자 선배는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반면 2차가해에 가담하고, 방조한 사람들은 정치권 카르텔의 비호를 받아 이제는 출마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 낸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더 나은 한 걸음을 내딛으리라 믿습니다.

2019년 가해자의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현재 6년째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민사 1심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정부 기관장이었고, 공무 중 일어났던 일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으며, 가해자 가족에 의한 피해자 개인정보와 재판기록 유출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아직 인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지난해 11월 2심 첫 공판이 열렸고,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너무 힘겹긴 하지만, 다른 분들께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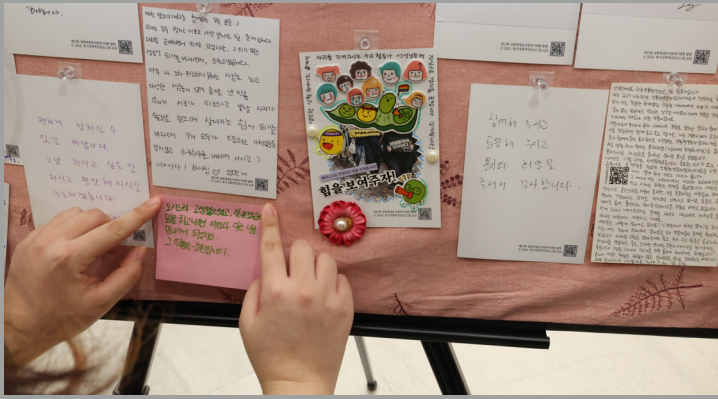
가해자와 충남도청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고 끝까지 싸워 정치권의 첫 번째 미투를 제대로 종결짓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세요.

힘겨웠지만 제가 지난한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연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대의 힘으로 살아낸 제가 다시 연대를 통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음 다해 나누고 싶습니다. 상담소 회원님들과 생존자분들과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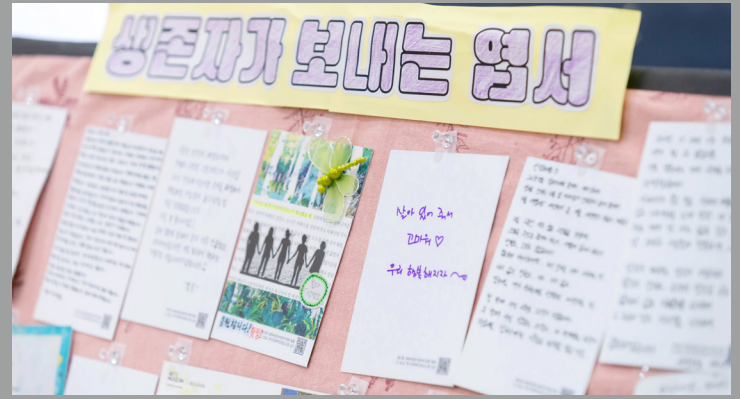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지은 올림



© 권영민

참여자(응답자)가 발언자(이꿈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판별이 빠르게 진행된다.



© 권영민

어딘가의 생존자가 이꿈이와 다른 생존자에게 보낸 엽서.



© 권영민

두 번째 이꿈이 라온이 가해자에 대한 기억을 상징하는 풍선을 터트리고 있다.



© 권영민

다섯 번째 이꿈이 하나가 자신의 내면을 상징하는 곰인형과 대화하고 있다.



© 권영민

여섯 번째 이꿈이 나기의 발화.



© 권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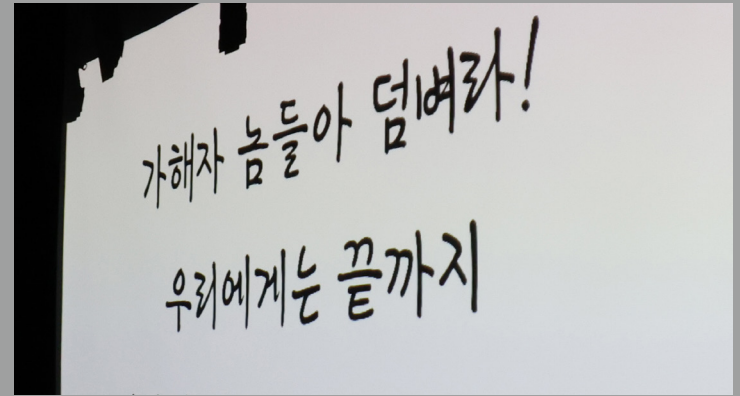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몇몇 사람들은 생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내고 있다.

제15회 생존자말하기대회

발화



사회자들이 “제15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 발화”의 무대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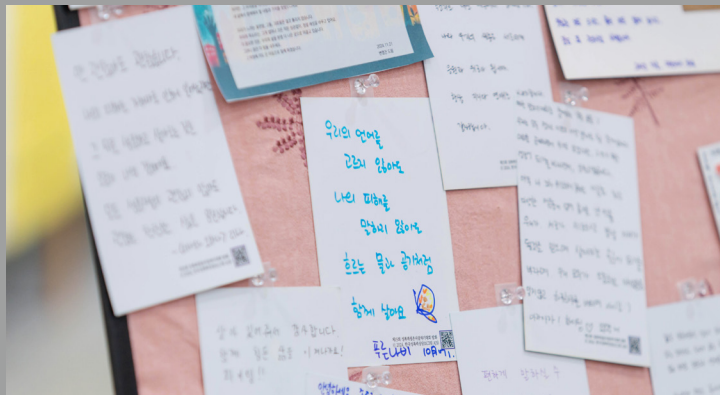
세 번째 이꿈이 햇님의 무대 스크린.



응답이의 발화를 나누는 오픈마이크 시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로비에서 응답이를 맞이하고 있다.



생존자에게 보내는 응답이들의 메시지들.



첫 번째 이꿈이 라일라의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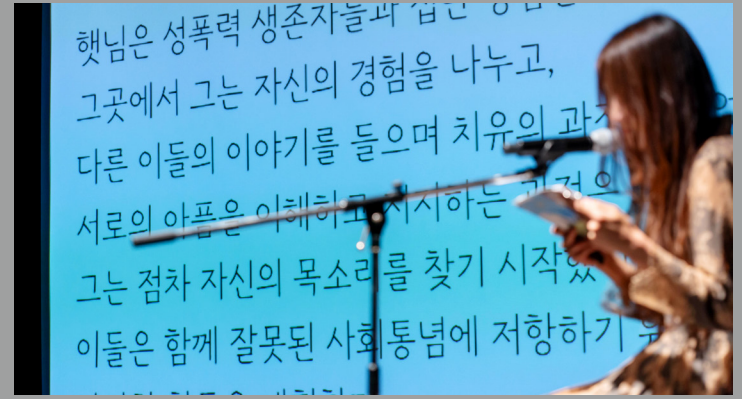
제15회 생존자말하기대회

발화



체크인 데스크에 가지런히 놓인 “제15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 발화”의 브로슈어.

© 해영



세 번째 이금이 햇님의 발화.

© 해영

특별 코너



여는 지지공연으로 참여한 심어송라이터 이지규.

© 해영



응답이에게 하늘에 수놓아진 별빛처럼 빛나는 연대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 해영

70 71



네 번째 이금이 엘의 발화.

© 해영



달는 지지공연으로 ‘리나와 오하나’ 멤버들이 훌라춤을 추고 있다.

© 해영

딥페이크 성폭력이 그다지

새롭지 않은 이유

유랑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한 방에 들어간 이용자 수가 “22만 명”이라는 점, 피의자의 80% 이상이 10대라는 점, 이들이 주변 친구, 가족, 교사를 상대로 가해했다는 점이 여러모로 충격을 준 사건이다. 사람들은 성폭력이 멀리 동떨어진 일이 아닌 나와 내 주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 놀라움, 분노, 불안함 등 여러 감정으로 감각했다. 정치권은 부랴부랴 범죄 대응 TF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가해자 엄벌을 약속했다. 그럼, 이제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2020년, N번방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었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쉽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은 이미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도 만연했다. 그러면 왜 여전히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반복될까?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폭력의 원인을 SNS와 AI 기술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것에서 찾았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은 SNS와 AI 기술이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 ‘몰래카메라’는 1997년에도 있었다. 신촌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된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 인터넷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00년대 초반에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돈이 된다’는 것을 학습한 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는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불법 촬영물이 난무했다. 그중 하나인 소라넷 사이트에는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강간 모의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밝혀진 웹하드 카르텔, N번방 사건은 모두 여성의 몸과 신체 이미지를 착취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일종의 디지털 성폭력 산업이었다. 지금의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발생했다. 물론 기술의 발달은 클릭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포르노’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만을 디지털 성폭력의 원인으로 삼을 때 감춰지는 것은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와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에 있다는 사실이다.

딥페이크 성폭력은 합성 기술이 너무 감쪽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를 사물 다루듯이 조각내어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폭력이다. 그렇기에 딥페이크 기술이 조각해서 누구나 합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도 성폭력이 된다. 심지어 성적 이미지나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내가 아니더라도 제목에 나의 이름과 신상정보가 붙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 또한 폭력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과 다르게 의미화된다. 여성의 벗은 몸은 성적 대상이 되고, 성적인 실천을 하거나 성과 결부되는 여성은 너무도 쉽게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 비하되고 무시당한다. SNS에서 몸 사진을 찍어 올리던 ‘일탈계’ 여성들이 N번방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도 쉽게 신고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 역시 사회적 낙인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여성의 벗은 몸은 여성을 헐박하고 ‘능욕’하는 수단이 된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기술과 온라인 공간만 따로 떨어져 진공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할 기술은 여전히 여성혐오와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용될 것이다. 딥페이크 성폭력을 이야기할 때 가해자를 엄벌하거나 기술 발달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혐오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하는 이유다.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남성문화 속에서 남자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멸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서로 간의 연대를 다진다. 학창 시절에 교실에서 남학생끼리 성관계 자세를 따라 하며 길길대거나 여학생을 희롱하며 놀리던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단톡방 성희롱과 N번방, 딥페이크 성폭력 방은 이러한 문화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자 서로의 남성성을 과시하며 ‘진짜 남자’가 되어가는 ‘남자들의 방’²이라고 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폭력 방에는 같은 지역이나 학교 중심으로 모인 후, 서로 알고 있는 지인을 대조해서 확인하고 함께 여성을 가해하는 껍지인방이 있었다. ‘남자들의 방’에서는 신체 노출이 없는 일상 사진과 신상 정보만 가지고도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단톡방 성희롱이 발생한다. 남성성은 이처럼 여성과 소수자를

타자화하고 혐오함으로써 구성된다. 이미 ‘일베’ 등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여성과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혐오하며 폭력 자체를 남성성의 자원으로 삼는 남성들이 등장한 지 오래다.³ 폭력적인 온라인 남성문화 속의 남성들은 은어와 밈, 짤을 통해 놀이처럼 소수자와 약자를 배척하고 혐오하며 큰 소속감을 느낀다. 이러한 온라인 여성혐오는 성폭력, 성착취, 온라인 성희롱,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bullying, 신상 털기와 같은 실질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남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를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교육은 필수적이다. 성폭력예방교육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성적 동의는 상대의 성적 제안에 “yes or no”를 답하는 것만으로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다. 동의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관계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조건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⁴ 즉, 적극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관계 내 권력을 끊임없이 살피고 성찰할 힘이 길러져야 한다. 벨 훅스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대신 감정적 금욕을 배우며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억압된 존재다. 성평등교육을 통해 상대와 소통하며 적극적 합의를 관계 속에서 실천하기를 배우는 것은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가부장제가 만들어내는 남성성에 균열을 내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성평등교육은 반차별·반폭력의 원칙에 따라 학교·교육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교육 환경 및 자원 확보, 성평등한 노동권, 재생산권 보장 등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⁵ 이를 위해 정치의 책임과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는 공공도서관의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열람 제한하고 폐기하라는 혐오 세력의 민원에 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 예산도 삭감했다.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N번방 사건 이후 또다시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뒤늦게 증액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기초 아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부 통계, 국가 교육 과정, 지자체 명칭 등에서 ‘여성’과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9개월째⁶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교육 정책과 딥페이크 성폭력 해결이 얼핏 보면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혐오와 남성문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성차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정말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할 때다.

1
 노컷뉴스, 與 “딥페이크 범죄자 패가망신 시켜야...법수익 몰수 추진”, 24.11.06, https://www.nocutnews.co.kr/news/624005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106053254

2
 황유나는 〈남자들의 방: 남자-되기, 유흥업소, 아가씨노동〉(2022)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과 유흥업소 공간을 분석하며 ‘남자들의 방’ 개념을 제시했다. 남자들의 방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남성보다 못한 인간으로 위치시키는 여성혐오”를 통해 남성 연대를 다지고 남자가 되어가는 가부장 사회의 장치다. 단톡방, N번방 등은 이러한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손희정은 갈수록 청년들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남성성 상실에 대한 공포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폭력을 가치 확인의 수단과 자원으로 삼는 남성성을 ‘고어 남성성’이라고 표현했다. 고어 남성성은 사야크 발렌시아의 ‘고어 자본주의’ 개념을 참고한 것으로 (1)디지털 거점으로 (2)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시민권과 자본 축적의 자원으로 삼고 (3)전 지구적 가부장체제의 남성성의 위계 안에서 ‘알파 메일’에 다다르지 못하는 ‘베타 메일’로서 주변화된 남성성을 극복 혹은 전유하기 위해 (4)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를 대상화함으로써 수단으로 삼는 것 (5)이런 양상이 산업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4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토론회 자료집, 2023, p.51

5
 정혜경 의원실, 진보당 정책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 토론회 자료집, 2024, p.13

6
 [편집자주] 저자가 글을 작성한 24년 11월 기준입니다.

남성성 “들” 과 젠더 테러리즘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남성성

2023년, 서현역, 신림역, 관악산 생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련의 “홍기 난동 사건”은 이를 모방해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잇따른 협박글과 더불어 많은 여성의 분노와 공포를 야기했다. 기동대, 특공대, 장갑차 배치 등 물리적 감시를 강화해 범행 기회를 차단하려는, 이른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라는 신자유주의적 범죄 예방론이 경찰의 대책으로 제시되자, 여성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시·공간 접근이나 활동 반경을 제약하고 두려움을 소비하는 젠더 관계의 불평등, 그리고 이것을 비가시화하는 “홍기 난동 사건”, “묻지마 범죄” 등의 명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르는 사이”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극단적 폭력을 행사할 만큼 개인의 정신병리가 핵심이라는 반발 앞에서 젠더를 어떻게 문제화해야 할지 머뭇거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들의 관계 혹은 성별만으로 사회적 관계이자 사회 구성의 원리로서 젠더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성 가해자의 이념적 동기와 폭력 실행에 있어 젠더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2023년 신림역 인근에서 남성 4명에게 홍기를 휘두르고 1명을 사망케 한 조 선은 평소 자신보다 외모, 경제력 등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온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¹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실현할 수단이나 사회적 인정이 부재한 상황, 즉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력을 주장하기 위한 실천 위협과 금기 위반을 감수, 과시할 수 있는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한 페미니스트들이 범죄를 남성성 수행의 산물로, 범죄를 행한다는 것이 곧 젠더 수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젠더 불평등을 문제화해 온 이유 역시 거기에 있다.²

2. 젠더를 구성하는 남성성“들”

남성성은 남성 집단 일반의 특성이 아니라 남성으로서 의미를 획득하는 구체적 실천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래인 코넬은 위와 같은 고전적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연구들을 빌어 계급, 인종 등이 젠더와 교차하며 구성된 주변적 지위에서 나타나는 실천을 주변적 남성성으로 명명한 바 있다.³ 이 주변부 남성성은 한편으로는 주변성과 피해자성을 근거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거리를 두지만, 자신을 ‘감히’ 무시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구축에 기여하기도 한다. 자신이 더 열등해지지 않기 위해 이성애, 시스젠더, 남성중심적 젠더 관계를 위반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성소수자 남성들 혹은 여성들을 추방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코넬은 이때 배제되는 저항적 실천을 종속적 남성성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오늘날, 이 주변성은 스스로를 성평등 정책이나 페미니즘의 피해자로 위치 짓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⁴

그런데 마찬가지로 삶의 조건들 속에서도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부장제의 이득을 얻는 실천들이 존재한다. “흥기 난동 범죄”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며 스스로를 정의 실현의 주체인 남성으로 의미화하되, 여성 피해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부도덕한” 여성 역시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표방하는 “사이버 렉카”의 활동이 대표적 예다. 이들은 보호 주체로서의 남성, 보호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방식의 젠더 지배를 영속화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구축한 질서로부터 경제적, 도덕적 이득을 얻는다. 코넬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남성성을 손질하며 가부장제의 배당금을 얻는 실천을 공모적 남성성으로 명명한 바 있는데,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와 거리를 두는 주변부 남성성의 특성은 하이브리드 남성성으로서 별도로 명명되기도 한다.⁵

그런데 헤게모니는 완벽한 통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 형태 역시 이성애 규범을 교란시키지 않은 채 게이 남성의 직업적 성취를 지지할 정도로 사회 변동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코넬은 〈남성성/들〉이라는 책의 2판에서, 전통적 성역할규범에 대한

강조보다 젠더중립적 외양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성취 역량을 강조하는 실천을 기업가적 남성성으로 명명하기도 했다.⁶ 그 후로도 ‘남성성’ 앞에 다양한 수식어들을 단 연구들이 많이 등장해 왔지만, 1993년 코넬의 위 책 첫 발간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논의를 소환하는 이유는 남성성‘들’의 다양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 즉 그것들이 동맹을 맺거나 지배 및 종속되는 관계나 여성성과 맺는 관계 속에서 젠더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주목하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기실 폭력과 범죄는 주변부 남성성의 결과물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전쟁과 계엄을 추동하고, 편의적 법의 해석과 적용이 남성연대와 직무 가치로 표방되어 온 것은 범죄와 젠더 수행에 대한 앞선 연구들이 보여주듯 새롭지 않다. 남성다움의 문화적 이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군 복무나 열악한 노동 상황을 감수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가부장적 배당금을 나눠줄 듯 호소하는 실천들이 정작 이 남성들이 노동자로서, 병역거부자로서 제도적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거부한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는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정박시키거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식과 예산을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삭감하며 젠더를 탈각하는 것, 나아가 여성폭력의 원인을 범죄심리학의 지식이나 “젠더갈등” 프레임을 비판하며 일축하는 정치인, 지식인 등의 실천 역시 포함된다. 주변부 남성성으로서 폭력 행사가 결국 처벌되고 정작 주변화된 남성 집단 일반의 권위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 “들”을 통해 지속되는 젠더 불평등으로부터 특권적 지위를 차지한다. 남성의 극단적 폭력을 주변부 남성성의 문제로 일축하기보다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또한 이를 지지하는 남성성 및 젠더가 구조화되는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다.

3. 남성성“들”과 여성폭력

2019년 캐나다 안보정보국(CSIS)은 여성혐오(misogyny) 동기를 테러리즘의 사유로 포괄하기 시작했다. 통상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에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특정 집단에 폭력을 가하거나 이를 수단으로 지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때 상정된 정치란 국가 안보로 국한되었고 여성이 표적이 되는 폭력을 다루는 데 체계적으로 실패해 왔기에 이를 문제화하기 위해 ‘성별 기반 테러리즘’이라는 개념이 주창되었다.⁷ 나아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성에 대한 적대와 폭력이 합리화되고 조장되는 현실은 기존의 테러리즘이 상정하는 명시적이고 조직적인 폭력 선동 없이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능하다는 것, 바로 그 이유로 폭력 행사와 동기 사이의 직접적 인과 관계 규명이 어려운 상황 자체를 문제화하기 위해 ‘확률적 젠더 기반 폭력(stochastic gender-based violence)’ 개념이 제안되기도 했다.⁸ 그리고 202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청은 17세의 한 남성이 낯선 여성을 살해한 사실과 관련해 가해자의 행위가 인셀⁹ 운동에 영감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테러 활동에 의한 살인/미수로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캐나다에서 여성혐오 동기를 젠더 주도 폭력(Gender-driven Violence, GDV)으로 언급한 최초의 케이스로 평가된다.¹⁰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여성인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여부가 아니라 구조적 차원의 여성혐오가 어떻게 한 개인의 미시적 삶에서 폭력의 동기와 맥락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법적 평가 기준인 가해자의 고의 입증을 넘어 그 동기 형성 과정에 놓인 혐오의 네트워크적 생산 과정을 테러로써 선언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현행 젠더 관계에 대한 남성들의 저항적 실천과 페미니즘 연대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이를 종속적 남성성으로 치부, 묵인하려 하고 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독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젠더폭력 예방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은 지속 보고되고 있지만,¹¹ 지적, 제도적 권력을 가진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과학적 인과관계론, 협소한 범죄심리학 지식, “젠더갈등” 담론을 활용해 여성들의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사소화하고 대학 내 페미니즘 연구 및 강좌의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성들의 두려움을 자원 삼아 이를 영속화하는 미디어 생산,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과 AI 산업 확장을 병행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실천이 젠더에 눈 감고 종속적, 공모적 남성성을 활용하되 그들 삶의 조건 개선에 부응할 책무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헤게모니란 자동적이지 않고 붕괴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당면한 상황은 지금 여기, 2024년 12월, “내란” 및 탄핵 정국을 통해 목도하고 있다. 이는 젠더 불평등의 해소를 통해 민주주의의 미래를 새롭게 해 온 반성폭력운동에 성별, 계층,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을 넘어선 모든 이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 |
|--|--|
| <p>1 2023.7.26., 이태일리, “신림 흥기난동범, 남들보다 키 작아 열등감 느껴”,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37762?sid=102</p> <p>2 Messerschmidt, J. W. (1997). <i>Crime as structured action: Gender, race, class, and crime in the making</i>. SAGE Publications, Inc.; Seidler, V. (2005). <i>Transforming Masculinities: Men, Cultures, Bodies, Power, Sex and Love</i> (1st ed.). Routledge.</p> <p>3 Connell, R. W. (2005), <i>Masculinities</i>, 2n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p> <p>4 Gosse, M., Halpin, M., & Maguire, F. (2024). <i>Stochastic Gender-Based Violence: How Incels Justify and Encourage Sexualized Violence Against Women</i>. <i>Violence Against Women</i>.</p> <p>5 Bridges & Pascoe, (2014), <i>Hybrid Masculinities</i>, <i>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of Men and Masculinities</i>, <i>Sociology Compass</i> 8/3 (2014): 246-258, 10.</p> <p>6 Messerschmidt, J. W. (1997). <i>Crime as structured action: Gender, race, class, and crime in the making</i>. SAGE Publications, Inc</p> | <p>7 Lockyer, D., Halpin, M., & Maguire, F. (2024). <i>The Emergence of the Incel Community as a Misogyny-Motivated Terrorist Threat</i>. <i>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i>, 1-17</p> <p>8 Gosse, Meghan et al., 2024, <i>Stochastic Gender-Based Violence: How Incels Justify and Encourage Sexualized Violence Against Women</i></p> <p>9 비자발적 독신 남성으로서 자신의 상황을 여성혐오로 귀인시키는 이들</p> <p>10 2023.11.29., CBC, “Man who pleaded guilty in incel-inspired Toronto murder sentenced to life in prison”,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murder-toronto-spa-man-sentencing-1.7041917</p> <p>11 Pérez-Martínez, V., Marcos-Marcos, J., Cerdán-Torregrosa, A., Briones-Vozmediano, E., Sanz-Barbero, B., Davó-Blanes, Mc., Daoud, N., Edwards, C., Salazar, M., La Parra-Casado, D., & Vives-Cases, C. (2023). <i>Positive Masculinities and Gender-Based Violence Educational Interventions Among Young People: A Systematic Review</i>. <i>Trauma, Violence, & Abuse</i>, 24(2), 468-486.</p> |
|--|--|

나, 너, 우리 이슈부터 우리의 태까지

도경

법률팀 활동가



2024년 7월 18일은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라는 문장을 듣는 순간 조금 훌쩍였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과 서로 빨강계 물든 눈가를 보며 슬쩍 웃기도 했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나고 대법원 건물을 나서며, 너나 할 것 없이 외쳤습니다. “사랑이 이겼다!”

한국에서 동성(同性) 부부는 그간 가족으로서 어떠한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커플 역시 그랬습니다. 게이 커플인 두 사람(A와 B)은 2013년 연애를 시작하여 2017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양가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려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평범한 부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도가 둘의 관계를 부정하는 순간들을 제외하면요.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사람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부부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두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각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A가 일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그들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판단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범주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건 말 그대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두 사람이 동성 부부 관계임을 밝히며, A를 B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남기며 필요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필요 서류인 인우보증서(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2020년 2월 26일, A는 B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국가에게 두 사람이 가족임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경,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인 B에게 전화를 걸어 A의 피부양자 등록 사실이 “착오”라고 이야기한 후, 내부전산망에서 A를 B의 피부양자에서 삭제 처리하고, 마치 한 번도 A가 B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A에게 해당 기간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금 납입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두 사람이 항변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도 차별적인 이 상황을 법원에서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관계인 이성커플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동성커플과 이성커플은 ‘다른 집단’이므로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에서는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 커플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이성 커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원고(A)와 B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건강보험공단)가 원고(A)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고 기쁜 결과였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고,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2024년 7월 18일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A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A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판결(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4년의 기다림 끝에, B의 피부양자라는 자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A의 대리인단 중 한 사람으로 함께 하였어요.

A와 B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가 맞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친구 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두 사람이 정말로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질문받았습니다. 소송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는 날에는 이곳에 유희기도 민망할 정도의 혐오 댓글들이 달렸고,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는 틀렸다’라거나, ‘죄악이다’라거나,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혐오 문서들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에 맞서 국제앰네스티, 가족법과 헌법학자들,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여러 지지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날것의 혐오를 정제된 언어로 반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도 이 사건 당사자 커플이 아닌 다른 동성부부들의 피부양자 신청에 대하여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등록을 미뤘었지만, 10월부터는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¹ 우리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혐오와 싸웠고, 끝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디딤돌 삼아,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혼인평등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혼인평등소송은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두 사람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 소송은 총 11쌍의 부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거부한 ‘혼인신고 수리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 만일 어떤 법원이 “그래 인정한다”고 하면 한국 최초의 법률혼을 한 동성부부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운동의 당사자들과 대리인단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같은 요청과 동시에 법원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현행법이 있다면 그것이 위헌적이라고 다투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결국은 ‘사랑’이 혐오를 이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동성혼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2019년에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에서도 동성 간 법률혼이 가능해졌고, 최근에는 일본 삿포로와 도쿄 고등법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과 혼인의 자유를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제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매년 꾸준히 찬성의 비율이 높아져 가장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4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²

한국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어쩌면 당신은 귀어로서 불가능했던 파트너와의 혼인신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제도에서 드디어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엘라이³로서 친구의 행복한 동성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들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을 해주며 축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동성의 사람을 “내 남편, 내 와이프”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동료들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으로, 미디어에서 동성부부의 삶을 보며 ‘아, 동성 커플의 삶도 알콩달콩하고 근데 뭐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고, 좀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상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의 삶도 더 불행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행복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뿐입니다.

여성운동의 길고 격렬한 투쟁 끝에 호주제가 폐지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 내에는 젠더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성을 물려받으려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합의’를 하여야 하고, ‘친가’와 ‘외가’의 구분은 여전히, 부부가 된 두 사람이 각자의 원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성부부에게는 이러한 문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젠더화된 역할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기에, 두 사람이 함께 ‘아들’과 ‘며느리’의 역할, 혹은 ‘딸’과 ‘사위’의 역할을 나누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예외는 다시 이성에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성과 한 남성이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부모를 부양하는 ‘이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삶’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 갈 사회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꿈꾸는 조금 더 평등한 사회에 가깝기에 이 소송에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사랑을 위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사랑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할 날을 기다리며.

1
“건보공단,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허용....‘큰 벽하나 사라져’”, 한겨레, 정인선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61084.html>, 2024.11.15. 확인

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4호, 2023년 5월 4주

3
[편집자주] 엘라이(Ally)란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연대자를 말합니다.

권유하며 작당모의를 틀

곳곳의 페미니스트

수수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이 글은 두 가지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쓰였다. 첫 번째는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총선대응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와 “북클럽 폭주하는 남성성의 현재들”이 페미니스트 작당모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장소에서 페미니스트 작당모의를 해보시길 권유하는 것이다. 시~작.

페미니스트 작당모의가 뭔데?

작당모의라는 말을 좋아한다. 좀 장난꾸러기 같은 귀여운 느낌이 있다. 심각하게 얼굴을 찌푸린 게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설레기도 하면서, 관심 있는 무언가를 도모해 볼 것만 같은 그런 단어이지 않은가. 거기다 혼자가 아니다. 여럿이, 함께, 사부작이, 모여서(이게 가장 중요하다) 뭔가를 탄생시킬 것만 같다. 방금 내가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걱정되어 인터넷에 “작당모의”를 검색해 봤는데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함께 피하고 의논함”이라고 한다. 휴, 제대로 알고 있었군. 아무튼 그렇다면 좋다.

이토록 귀여운 “작당모의”라는 글자 앞에 “페미니스트”가 붙는다? 벌써 마음이 간질간질하다. 내가 아는 페미니스트들은 많은 경우 웃기고 섬세하고 깊이가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말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라 세상을 뒤집어놓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불쾌하거나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페미니스트 작당모의는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의에 따른다면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총선대응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와 “폭주하는 남성성의 현재들 북클럽” 모두 페미니스트 작당모의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이다.

총선대응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와

북클럽 “폭주하는 남성성”의 현재들

“총선대응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2개월 남겨두고 시작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삭감, 계속되는 정치인들의 여성·소수자 혐오 발언. 정치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는데, 정작 나의 삶을 다루는 정치는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던 바로 그때.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고 싶다는 바로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다.

일단 “콩깍지 프로젝트”라는 귀여운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총선 젠더 의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겠다는 야망 있는 목표를 세웠다. 그에 걸맞게 발랄한 콩깍지 그림을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었다. 동네 인쇄소에 가서 “페미니스트”라고 크게 쓰인 홍보 전단을 인쇄했다. 그다음 지도를 꺼내 들었다. 이 동네에 수상해 보이던 장소가 뭐가 있었지...? 제로웨이스트 샵, 단골 베이커리, 근처 학교, 청년 지원 공간, 지역 성평등 커뮤니티 센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벗어나 각 공간에 가서 전단을 붙였다. 흔쾌히 벽을 내어주는 곳들을 만나며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른다. 신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떡볶이도 사 먹었다.

모임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 건물에 도착했다. 이 모임 구성원은 무려 여덟 번 만났고 강의와 토크쇼, 집회 부스를 차리는 별도의 행사에까지 함께했다. 매주 모여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정치를 읽어내며 토론했는데,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을 나누고 “아, 이런 것도 중요했지.” 하며 서로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사와 생각은 모두 다양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주거권에 관심이 많았고, 누군가는 성적 권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의제가 다른 의제와 얽히기도 했다. 가령 동물권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얽혔고, 사랑과 차별에 대한 생각도 얽혔다.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한데, 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은 도대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페미니스트 관점의 정책과 법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논도 펼쳐졌다. (솔직히 글을 쓰는 이 시점은 콩깍지 프로젝트 모임을 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난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콩깍지 멤버들이 작성한 후기를 읽어보니 기억이 생생히 돌아왔다. 여러분도 후기를 추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 북클럽 <폭주하는 남성성의 현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콩깍지 프로젝트를 통해 “이게 되네?” 자신감을 얻은 터라 좀 더 당당하게 지도를 펼쳐 들었고, 새로운 공간들에도 홍보 전단을 건넸다. 그리고 정말 전단을 보고 모임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 페미니스트가 낙인이 되어 페미라고 지목되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시국에 함께 하고자 온 사람들. 도대체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남성성”은 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 파헤쳐보고 싶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우리는 어려운 책과 흥미로운 다큐를 보았고,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만큼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 (이것도 후기가 있다. 책을 읽을 때 누군가가 고민을 담아 만든 독서 리스트를 “커리(세미나 커리큘럼의 줄임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 아시나요? “커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도 아시나요? 후기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너도나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도 나도 페미니스트 작당모의를 하자

코로나 시기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여성혐오가 여성으로 하여금 삶을 중단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비슷한 시기, 페미니스트 번아웃도 포착되었다.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겪은 후 페미니즘은 다시 급부상했고 많은 청년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누나/애야/너 혹시 페미야?”라는 말을 듣는다. “페미”는 힘을 주는 정체성이면서도 멸칭이기도 하다. 멸칭을 정체성으로 삼는 일들이 우울과 불안을 겪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만나야 한다. 실재하는 당신과 나를 느낄 때일수록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콩깍지 프로젝트에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란 생각을 했다는 멤버의 얘기는 정말 소중한 증언이기도 했다. 내가 우리가 될 때, 외로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롭지 않게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만다는 행위는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 발언과 사이버 불링,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등등을 마주한 페미니스트들은 부단히 고민했다.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그리고 많은 자리에서 여성과 소수자가 “숨 쉬는 몸을 가지고 있는 개체이자 사람”²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냈다. 누군가가 혐오하는 대상은 단순히 흠여지는 디지털 공간의 코드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우리는

아프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상처받더라도 서로 만나고, 서로 만나서 외롭지 않기를. 그것이 내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페미니스트 작당모의를 권하는 이유이다.

거창한 듯 적었지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재밌을걸요? :)

1
가을, “[후기]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 첫모임: 나와 내삶으로부터 싹틔우는 정치” <https://sisters.or.kr/activity/law/7057>

2
이와 같은 얘기는 북클럽 “폭주하는 남성성”의 현재를 이후 열었던 이슈대응집담회 “폭주하는 남성성”의 여러 패널이 한 것이다. 이 중 “숨 쉬는 몸을 가진 개체”에 대한 언급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추지현 님이 하셨음을 밝힌다.

안식년과 복귀 후

안녕하세요, 리을 미음 반침의 앓 활동가예요! 2023년 2월부터 1년간 안식년을 다녀온 후, 2024년 2월부터 여성주의상담팀으로 복귀했습니다. 2017년에 입사한 이후 늘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활동 후기를 썼는데,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로서 첫인사말을 쓰려니 감회가 새롭네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랜 기간 근무한 활동가가 충분한 쉼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안식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만 6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신청하여 안식년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신청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사용을 조정해요. 안식년 기간의 급여는 6개월간 월 본봉액 전액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무급으로 하는 것과 12개월간 균등하게 월 본봉액의 반액을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에 관한 규정 자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안식년 기간의 급여가 3개월간 월 본봉액의 반액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안식년을 사용하는 활동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 안식년을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처럼 규정을 바꾸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최초로 안식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첫 선례인 만큼, 안식년을 정말 잘 보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안식년을 앞두고 먼저 활동가들에게 ‘버킷리스트’ 공책을 돌려 제가 1년간 뭘 하면 좋겠는지 적어달라고 했는데요, ‘신나게 모든 시간을 즐기!’부터 ‘새로운 취미 1개 만들기(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 ‘혼자 여행 떠나기’ 등 다양한 추천을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안식년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면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주로 뭘 했는지 떠올려 보니, 운동과 여행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먼저 운동 얘기부터 해볼게요. 안식년을 맞아 제가 가장 먼저 한

새로운 팀에서의 1년

앓



일은 폴댄스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일하는 동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선뜻 시작하지 못했거든요. 폴댄스를 배우다 보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나중에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 헬스장에 다니면서 PT도 병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제 일상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안식년을 마치고 복직한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에어리얼 실크, 홀라, 양궁, 볼링, 클라이밍, 웨이크보드, 패들보드, 서핑 등 해보고 싶은 운동 종목이 생기면 마음껏 체험해 보았답니다. 하루하루 재미있고 성취감이 있었어요. 회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운동이 생기면 뭐든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찾아보면 체험 강좌가 많더라고요!

여행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혼자 3박4일로 제주 환상 자전거길을 완주하기도 했고, 때마침 환갑을 맞은 어머니와 대만 여행을 가기도 했고, 친구와 강릉에 놀러 가 바다 수영도 하고 수평선이 보이는 인피니티풀(호텔 옥상 수영장)에서 밤늦도록 동동 떠있기도 했습니다. 봄에는 진해군항제에서 벚꽃을, 여름에는 강과 바다를, 가을에는 밤 산지인 공주와 사과 산지인 예산에서 시장 먹거리를, 겨울에는 각각 제주와 강원에 있는 지인 집에서 장작으로 모닥불을



피우는 벽난로를 보면서 사계절을 만끽했어요.

무엇보다 안식년을 기회로 미국 할머니 댁에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작년 연말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한 달 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저처럼 안식년 내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에 6개월 급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하하). 상담소에 후원회원이 늘어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서 제가 다음 안식년을 보낼 때는 12개월 급여를 다 받을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앞서 인사드렸듯이 저는 여성주의상담팀으로 복귀했습니다. 성문화운동팀과 여성주의상담팀은 주된 업무가 아예 달라서 모든 걸 새로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농담 삼아 ‘안식년 동안 성폭력이 뭔지, 여성주의 상담이 뭔지 다 까먹었다’라고 호소했지만, ‘그럴 리 없어. 얌은 잘할 거야’라고 믿어 주는 동료들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복직하면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다시 열고 싶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막상 상담·지원 업무를 병행하면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준비하려니 너무 정신없고 바빴어요. 그러면서도 성폭력 생존자들을 만나고, 저마다 다른 생존자들이 서로 공감하고 용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건 여전히 가슴 벅차고 힘이 났습니다. 아, 이제 정말 활동가의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비로소 실감이 들었어요.

저에게 안식년은 단순히 쉬는 데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독기가 빠졌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그 대신에 생긴 여유가 상담·지원 업무에는 제법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안식년을 보낼 동료들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서 돌아올지 기대됩니다. 여웃돈을 미리 모아두라는 조언과 함께, 이만 총총!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시는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Krithian Jhoel, 강경윤, 강단비, 강영, 강정희, 강태원, 강현민, 강혜성, 고가현, 고경표, 고다혜, 고어아, 고유미, 고진선, 고현경, 공지우, 광상탄, 광주은, 광현수, 구슬기, 구슬희, 구현지, 권다빈, 권민정, 권보인, 권은숙, 권해주, 권혜림, 권혜은, 김가현, 김건규, 김경환, 김고은, 김나리, 김나영, 김도연, 김동주, 김동진, 김리아, 김명환, 김미정, 김미현, 김민숙, 김민의, 김민주, 김민주, 김보경, 김산하, 김서연, 김선미, 김선미, 김선주, 김선철, 김성자, 김세은, 김세정, 김세정, 김세창, 김세훈, 김소영, 김솔아, 김수용, 김수정, 김수진, 김승필, 김승해, 김아름, 김양원, 김영경, 김영미, 김영재, 김우주, 김유연, 김은비, 김은선, 김은정, 김은호, 김의석, 김인애, 김일두, 김재서, 김재연, 김정병, 김정은, 김정현, 김준영, 김지민,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진우, 김총욱, 김태희, 김하진, 김하진, 김향숙, 김향지, 김현서, 김현선, 김현정, 김현필, 김혜윤, 김효정, 김효정, 김효진, 김희연, 나경숙, 나현, 나혜림, 남동호, 남세령(김진영), 노금희, 노송희, 노정림, 류미연, 류현아, 마상호, 마상오, 맹믿음, 문미정, 문용희, 문지원, 문지해, 민동인, 민선기, 민지형, 박경아, 박꽃송이, 박다혜, 박동현, 박미송, 박서진, 박서현, 박선홍, 박성혜, 박세환, 박소현, 박승우, 박정남, 박정민, 박지해, 박진, 박진서, 박초롱, 박현선, 박현수, 방미희, 방보경, 배미경, 배병준, 배정현, 배혜림, 백소영, 백정아, 백지훈, 변호, 빈예은, 서경희, 서림, 서범석, 서순신, 서지민, 설희정, 성현규, 손기활, 손보민, 손우성, 손은숙, 손희정, 송수정, 송여진, 송유림, 송정근, 송주화, 신동혁, 신미혜, 신민경, 신용우, 신은진, 신정현, 신주영, 신혜원, 신혜인, 심성은(蓊), 심연희, 심은영, 심혜경, 안수현, 안수환, 안시윤, 안연희, 양동윤, 양서진, 양은휘, 양형열, 양형열, 엄채영, 연시영, 오민아, 오상원, 오선진, 오세림, 오승택, 오윤정, 오정균, 오정민, 오정연, 오정인, 오혜민, 오혜선, 오희정, 오희진, 왕세박, 우현민, 원석화, 원정하, 위서진, 유소연, 유여원, 유채린, 유현경, 유혜진, 유희열, 윤미향, 윤석찬, 윤연지, 윤정원, 윤정훈, 윤한길, 윤현정, 이규원, 이기성, 이나은, 이다연, 이다정, 이미선, 이민희, 이보라, 이상준, 이새연, 이서미, 이서원, 이석주, 이선호, 이성미, 이성은, 이세인, 이소미(김현주), 이소진, 이소현, 이소희, 이시림, 이아영, 이영림, 이영석, 이영선, 이영후, 이에빛, 이용근, 이용석, 이용훈, 이유미, 이유진, 이유진, 이윤상, 이윤주, 이윤지, 이은미, 이은빈, 이재룡, 이정서, 이정은, 이지애, 이지예, 이지윤, 이천기, 이하나, 이하나, 이하은, 이현기, 이현성, 이현지, 인진완, 임민경, 임영식, 임은주, 임지효, 임진희, 임현진, 임형민, 장동수, 장동현, 장현민, 전민영, 전병욱, 전세영, 전수현, 전영은, 전은규, 정경애, 정경인, 정다혜, 정민규, 정복현, 정선영, 정수아, 정승혜, 정준화, 정지은, 정해인, 정해주, 정혜선, 정화현, 조경태, 조민정, 조민지, 조민호, 조순애, 조아라, 조연인, 조영수, 조우원, 조유리, 조유진, 조윤지, 조유희, 조은, 조은영, 조이현임, 조재희, 조현수, 좌은정, 주서희, 주진희, 최광성, 최성민, 최세희, 최소윤, 최솔, 최신헌, 최신행, 최아연, 최아영, 최지민, 최지안, 최지혜, 추인영, 킹베스티오, 편소연, 하선주, 하종연, 하형진, 한규영, 한다영, 한두리, 한소범, 한영신, 허성희, 허율리, 허은하, 홍나희, 홍명하, 홍수민, 홍수민, 홍재현, 황미경, 황민국, 황성환, 황유나, 황지영(이상 371명)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주)피알판촉, (주)한샘, LEE JO HYANG, ooopiuu, WOO JOHN JONGKWAN, 강경인, 강남식, 강다영, 강동화, 강동희, 강등록, 강민서, 강민지, 강보길, 강소희, 강숙영, 강양희, 강영순, 강예은, 강유가람, 강은진, 강인화, 강재희, 강제인, 강지원, 강창일, 강한솔,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병진, 고병현, 고보경, 고봉섭, 고선주, 고성관, 고예린, 고예원, 고은별, 고입숙, 고재경, 고정남, 고정민, 고정삼, 고지연, 고지현, 고진선, 고태우, 고하영, 고희경, 고희선, 공경희, 공다연, 공수현, 광경화, 광보매, 광상아, 광영화, 광옥미, 광옥이, 광하진, 광현지, 구민희, 구분효, 구태현, 구향모, 구혜린, 권구홍, 권김현영, 권다혜, 권상범(리치몬드), 권세린, 권세윤, 권소영, 권수현, 권수혜, 권순호, 권영신, 권예선, 권인선, 권정, 권주영, 권주희, 권지연, 권효중, 금천구여성축구, 금철영, 길지혜, 김가영, 김가현, 김경민, 김경선, 김경주, 김경찬, 김경희, 김경희, 김계진, 김계현, 김고은, 김광진, 김광현, 김규원, 김기태, 김기훈, 김나연, 김나은, 김나은, 김나희, 김난형, 김남희, 김다미, 김다영, 김다운, 김다운, 김다운, 김다인, 김다희, 김다희, 김대삼, 김대연, 김도린, 김도연, 김도엽, 김도움, 김도희,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두라, 김돌순, 김로사, 김리나, 김명민,

김모래, 김문영,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량, 김미선, 김미순, 김미옥, 김민건, 김민규, 김민기, 김민범, 김민성, 김민아, 김민은,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희, 김민희, 김백애라, 김보람, 김보영, 김보연, 김보화, 김복희, 김복희, 김상미, 김상원, 김상정, 김상철, 김선경, 김선미, 김선아,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선우, 김선재, 김선혜, 김선희, 김성동, 김성미, 김성수, 김성욱, 김성현, 김성희, 김성희, 김세영, 김세희, 김세희, 김세훈, 김소라, 김소연, 김소윤, 김소정, 김송이, 김수, 김수라,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진, 김수진, 김수향,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수희, 김순영, 김슬아, 김승연, 김승재, 김승현, 김시원, 김신희정, 김아연, 김안나, 김양은, 김양지, 김양지영, 김양희, 김엘림, 김여진, 김연경, 김연경, 김연경, 김연수, 김연수, 김연우, 김연우, 김연우, 김연재, 김연희, 김영나, 김영룡, 김영선, 김영수, 김영신, 김영수, 김영희, 김영희, 김예람, 김예리, 김예리, 김예림, 김예진, 김요섭, 김용빈, 김용선, 김우영, 김원규, 김원식, 김원우, 김유리, 김유영, 김유진, 김유진, 김유정, 김윤경, 김윤경, 김윤아, 김은경, 김은경, 김은별, 김은선, 김은솔,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이슬, 김인경, 김인숙, 김인혜, 김재원, 김재원, 김재준, 김재희, 김정민, 김정완, 김정은, 김정혜, 김정희, 김정희원, 김종혁, 김종희, 김주연, 김주영, 김주은, 김주희, 김주희, 김준, 김준범, 김준수, 김준태, 김지선, 김지선,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우,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김지유, 김지은,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호, 김지훈(김해리), 김진리, 김진범, 김진아, 김진용, 김진희, 김찬우, 김채연, 김채연, 김채영, 김치연, 김탁환, 김태경, 김태연, 김태원, 김태희, 김태희, 김하나, 김하나, 김하나, 김하미, 김하연, 김하영, 김하영, 김학선, 김한선혜, 김한솔, 김해경, 김해람, 김현경, 김현숙, 김현주, 김현주, 김현직, 김현진, 김현진, 김현진, 김형근, 김형기,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민, 김혜선, 김혜선,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원, 김혜윤, 김혜은, 김혜인, 김혜지,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호연, 김홍준, 김학숙, 김화영, 김효리, 김효선, 김효진, 김희경, 김희경, 김희라, 김희란, 김희선, 김희원, 나미나, 나성은, 나수정, 나윤경, 나윤지, 나인선, 나인영, 나혜선, 나희영, 남민영, 남병희, 남선우, 남수민, 남순아, 남슬아, 남승현, 남정현, 남지연, 남태진, 남현미, 남현우, 남혜란, 남효정, 노미선, 노영은, 노유정, 노윤주,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주희, 노지성, 노태운, 노희민, 노희선, 도경선, 도병욱, 도서출판 움직씨, 도정호, 돌돌꽃봄, 류길훈, 류신희, 류지은, 류하연, 류한솔, 류현진, 류혜진, 류호찬, 류희준, 마민지, 마정운, 마준희, 목소희, 문경희, 문귀영, 문기선, 문미정, 문박엘리, 문수연, 문윤경, 문준희, 문지영, 문해인, 문혜준, 문효진, 문효진, 문희영, 민난주, 민정원, 민혜영, 박기민, 박나연, 박다영, 박다혜, 박대진, 박명선, 박문정,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정, 박민아, 박민자, 박민주, 박민지, 박민지, 박민재, 박보영, 박보은, 박부진, 박산걸, 박상신, 박상희, 박서원, 박서인,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준, 박세민, 박세진, 박소라, 박소리, 박소미, 박소연, 박소희, 박수경, 박수미, 박수연, 박수용,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환, 박슬기, 박아름, 박아이린(Park Aileen), 박유림, 박윤미, 박윤성, 박윤주, 박은미, 박은선, 박은지, 박은지, 박은진, 박은화, 박이수, 박인기, 박재민, 박재하, 박정란,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화, 박정훈, 박정훈, 박종욱, 박종희, 박주영, 박주현, 박준하,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지영, 박지원, 박지현, 박지현, 박지혜, 박진선, 박진표, 박진화, 박창경, 박초롱, 박한샘, 박한울,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혜민, 박혜하, 박효원, 박희은, 박희정, 박희주, 반상환, 반순미, 방영화, 방은재, 배경, 배도준, 배명진, 배셋별, 배성신, 배수현, 배순희, 배우미, 배중수, 배진영, 배채은, 배하늘, 배현진, 배화정, 백경원, 백경원, 백경훈, 백미록, 백세희, 백수미, 백인애, 백주현, 백지선, 백지연, 백현, 백혜랑, 백희원, 변순임, 변유경, 변주희, 변지은, 변필건, 복서희, 부성필, 서권일, 서명호, 서미란, 서미현, 서보일, 서성진, 서순진, 서연희, 서용완, 서원, 서윤정, 서정민갑, 서정표, 서정현, 서지은, 서진, 서현아, 서혜미, 서혜원, 서혜진, 서효원, 선우준, 선재희, 설연자, 성기원, 성연이, 성예랑, 성현아, 성혜경, 세무법인 리더스 강남지사, 세움교회, 소희성, 손경이, 손명구, 손미연, 손미정, 손민우, 손상생, 손소희, 손우서, 손원영, 손유진, 손정민, 손지민, 손지민, 손차민, 송명희, 송민섭, 송수진, 송용원, 송유정, 송은숙, 송인경, 송차령, 송형준, 신경숙, 신경혜, 신기훈, 신다희, 신동란, 신동현, 신명숙, 신상호, 신선, 신수아, 신아름, 신우정,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정훈, 신종훈, 신지현, 신지혜, 신필규, 신한솔, 신현규, 신현주, 신혜미, 신혜미, 신혜수, 신혜은, 신혜진, 신희원, 심상희,

심선지, 심성보, 심승주, 심아영, 심은희, 심조원, 심혜련, 심혜림, 심효진, 썸스테이지, 안경훈, 안미향,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선민, 안소진, 안승연, 안원숙, 안유정, 안유정, 안은혜, 안재훈, 안지희, 안철민, 안춘기, 안태희, 안현수, 안형윤, 안희경, 양경아, 양기진, 양민희, 양성욱, 양성은, 양수안나, 양유경, 양유정, 양은희, 양주희, 양지연, 양창아,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어진희, 엄은지, 엄희수, 여은경, 여은진, 염미지, 염정신, 영실, 예미림, 오경민, 오경희, 오선곤, 오성훈, 오세훈, 오세희, 오수연, 오수진, 오승미, 오승민, 오승이, 오승재, 오승준, 오연경, 오영일, 오은비, 오의정,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오지은, 용윤신,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윤지, 우춘희, 우효상, 원경주, 원미림, 원민경, 원선아, 원순경, 원찬희, 월드메디칼(고영국), 위은지, 위정윤, 유경미, 유다솔, 유민경, 유민수, 유병준, 유보람, 유서연, 유선영, 유세정, 유승규, 유승재, 유승진, 유연정, 유영서, 유인규, 유정수, 유다정, 유정훈, 유지아, 유지예, 유희일, 유희미, 유희승, 유희아, 유희하, 유희은, 윤다솔, 윤다현, 윤미희, 윤선우, 윤성준, 윤소미, 윤소정, 윤소진, 윤수, 윤수진, 윤수정, 윤승철, 윤승현, 윤아름, 윤애리, 윤양지, 윤연수, 윤영란, 윤영숙, 윤영호, 윤은호, 윤은정, 윤자영, 윤장혁, 윤정선, 윤정원, 윤정희, 윤지원, 윤지원, 윤현아, 윤희정, 음선화, 이강익, 이강화, 이건정, 이경미, 이경수, 이경숙, 이경은, 이경진,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계화, 이규리, 이규화, 이나연, 이나영, 이남주, 이다은, 이도엽, 이동구, 이동규, 이동영, 이동원, 이동은, 이동현, 이면중, 이명란, 이명숙, 이명신, 이명희, 이문규, 이문주, 이미경, 이미란, 이미령, 이미정, 이미화, 이민아, 이민주, 이보미, 이보배, 이부덕, 이비현, 이산하, 이산하, 이상미, 이상민, 이상용, 이상원, 이상진, 이새름, 이서희, 이선영, 이선택, 이선히, 이선희, 이선희, 이설화, 이성인, 이성주, 이세린,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현, 이수길, 이수안, 이수연, 이수열,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숙현, 이슬기, 이승구, 이승민, 이승숙, 이승아, 이승용, 이승은, 이승진, 이안나, 이여경, 이연정, 이연주, 이연주, 이연주, 이연표,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주, 이영준, 이예지, 이용택, 이우원, 이원형, 이원홍, 이유미,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심, 이은애, 이은주, 이은지, 이은호, 이은화, 이의중, 이자민, 이재원, 이재원, 이재호,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인, 이정현, 이정현, 이정화, 이정훈, 이종은, 이종희, 이주영, 이준기(박은혜), 이준범, 이준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민, 이지영, 이지영, 이지원,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인, 이지행,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진선, 이진숙, 이진희, 이진희, 이창솔, 이창수, 이채영, 이창애, 이태희, 이하연, 이하영, 이혜사랑, 이혜원, 이향삼, 이현미, 이현수, 이현우,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연, 이혜인, 이혜정, 이혜정, 이혜진, 이혜진, 이호선, 이호진, 이홍연, 이홍은, 이화진, 이효린, 이효정, 이희동, 이희섭, 이희수, 이희승, 이희진, 임근호, 임경진, 임규정, 임기택, 임선민, 임של아, 임소정, 임수연, 임수영, 임예은, 임오주, 임유영, 임은규, 임은재, 임재덕, 임정욱, 임주희, 임지숙, 임지현, 임천용, 임하나, 임혜경, 임효진, 임홍섭, 임희윤, 장다희, 장도희, 장성연, 장성희, 장세령, 장수경, 장수영, 장수진, 장여경, 장연주, 장예리, 장윤경, 장윤성, 장은미, 장은재, 장은지, 장인혜, 장정윤, 장주영, 장지승, 장진, 장하나, 장혜윤, 장효영, 장효정, 장희진, 전미나, 전민주, 전병미, 전서래, 전소연, 전수인,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민, 전유경, 전유나, 전은재, 전재혁, 전정현, 전지현, 전현정, 전혜영, 전화정,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광철, 정교화, 정규민, 정기영, 정나리, 정다솔, 정대련, 정덕기, 정동연, 정두리, 정명화, 정문영, 정미사, 정민성, 정민이, 정보리, 정보배, 정복련, 정상순, 정서하, 정선영, 정선영, 정세미, 정소린, 정슬아, 정아, 정여진, 정연주, 정영미, 정영서, 정영석, 정영애, 정애, 정유림, 정유선, 정윤경, 정윤지, 정은경, 정은령, 정인호, 정재영, 정재우, 정재욱, 정재하지은, 정정기, 정종인, 정준애, 정지아, 정지운, 정지은, 정지인, 정지현, 정지혜, 정진주, 정진화, 정조윤, 정현, 정현교, 정현우, 정혜윤, 정희수, 조경오,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조동현, 조무호, 조민아, 조민우, 조서연, 조선주, 조성현, 조성화, 조소연, 조소연, 조수연, 조연주, 조영선, 조영선, 조영식, 조원영, 조유진, 조윤희, 조은미, 조은샘, 조은숙, 조은울, 조은정, 조인경, 조인석, 조인욱, 조일래, 조임춘, 조재민, 조주영, 조준희, 조지원, 조지혜, 조진희, 조한삼, 조한이, 조한철, 조해정, 조현선, 조현우, 조현주, 조혜인, 조혜정, 조훈제, 좌유빈, 주광용, 주말기공소, 주명희, 주소현, 주호준, 지성업, 지승경, 지오, 지인숙, 지현, 지현주, 지혜민, 진새록, 차선주, 차선안, 차영선, 차현수, 차현영, 차혜은, 채우리, 채우리, 채은혜, 채은화, 채현숙,

채훈병, 천정아, 천정환, 최가영, 최강백, 최건호, 최경식, 최근우, 최금래, 최기영, 최다운, 최동석, 최미경, 최미림, 최미숙, 최미진, 최민아, 최민아, 최민우, 최민정, 최병훈, 최보름, 최보미, 최보영, 최보원, 최빛그림, 최상국사세, 최서영, 최서윤, 최서희, 최석우, 최성실, 최성호, 최세진, 최소영, 최수민, 최수연, 최수진, 최숙희, 최여정, 최연우, 최영미, 최영애, 최영애, 최영주, 최옥석, 최용득, 최용석, 최원일, 최유경,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식, 최은정, 최은희, 최익진, 최인혁, 최정운, 최준, 최준원, 최지연, 최지원, 최지원, 최지은, 최지은, 최진안, 최태순, 최한나, 최한민, 최현경, 최현윤혁, 최현정, 최현정, 최혜란, 최혜린, 최혜영, 최효선, 최효순, 최희범, 주민주, 추선미, 추정희, 추지현, 추창현, 탁수정, 편진범, 표혜림, 하나은, 하다영, 하룡, 하승수, 하연수, 하에서, 하은주, 하중석, 하주현, 하지수, 하지은, 하희정, 한기모, 한동훈,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보라, 한수경, 한승진, 한승호, 한신복, 한아름, 한여선, 한영미, 한예림, 한예솔, 한윤미, 한은희, 한이계영, 한인택, 한일야, 한정림, 한지연, 한진영, 한채윤, 한해령, 한희정, 함경진, 함아름, 허근우, 허선형, 허성준, 허신애,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민, 허지원, 허지은, 허진아, 허태규, 홍보은, 홍상희, 홍성미, 홍세원, 홍수진, 홍순기, 홍은정, 홍일선, 홍주은, 홍지은, 홍진경, 홍찬수, 홍현진, 황미선, 황성민, 황송원, 황숙희, 황예나, 황유미, 황정진, 황지상, 황지원, 황진선, 황효진, 황휘(이상 1,406명)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얼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NG FAITH SHI EN, 강문식, 강민해, 강은재, 강지혜, 고병진, 고지현, 고진선, 고현경, 고화정, 고희선, 곽선하, 권태형, 권희정, 금보경, 김광현, 김다미, 김다솔, 김다은, 김도형, 김도희, 김미우, 김미진, 김민규, 김민석, 김민아, 김보정, 김복희, 김선아, 김선환, 김설아, 김소연, 김소현, 김수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진, 김아리, 김연수, 김연순, 김예리, 김유리, 김유성, 김유숙, 김유열, 김윤혜, 김은지, 김재은, 김정영, 김주연, 김지국, 김지민, 김지원, 김지원, 김희은, 김지혜,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해나, 김현자, 김혜린, 김혜연, 김혜진, 김희도,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승연, 노영미, 노주희, 노희정, 돌돌꽃반, 동진한의원, 류정빈, 류중현, 류한솔, 묵소희, 묵숙영, 문준희, 미씨유럽, 민슬기, 박계나, 박미나, 박미정, 박상희, 박세종, 박소미, 박수민, 박용순, 박인필, 박정민, 박정수, 박정욱, 박하린, 박현세, 박현희, 박혜민, 박혜상, 박혜은, 박효정, 방세민, 배정원, 배진서, 백상준, 법무법인(유한) 지평, 서범원, 서영민, 서주리, 서해인, 섬김교회, 성민주, 성세희, 손정은, 송민성, 송재희, 송지영, 송희원, 스튜디오51, 신경혜, 신보영, 신영미, 신용범, 심현희, 심원보, 심현실, 안소연, 안호선, 양기진, 양윤희, 양주애, 양지애, 엄지은, 여나윤, 염소라, 염정신, 예미림, 오민지, 오선호, 오연서, 오영일, 오정배, 오정희, 오희중, 원지혜, 위정윤, 유규민, 유소리, 유예리, 유용석, 유정안, 유형신, 유혜영, 윤가은, 윤여연, 윤영선, 윤채희, 윤하영, 윤희진, 이경선, 이경아, 이기연, 이도행, 이도희, 이명신, 이명희, 이미홍, 이산하, 이산하, 이성아, 이소연, 이수정, 이승민, 이승혜, 이승희, 이어진, 이영지, 이영주, 이욱영, 이윤주, 이은미, 이은솔, 이은정, 이은지, 이정숙, 이정민, 이정화, 이정효, 이종국, 이주현, 이준용, 이지영, 이지예, 이찬희, 이태복, 이해인, 이향심, 이향화, 이혜림, 이혜진, 이효은, 임나영, 임명순, 임미영, 임소현, 임수현, 임윤정, 임은희, 임지연, 임지현, 장다혜, 장예승, 장주영, 장희진, 전수인, 전순연, 전순유, 전승기, 전해영, 정다연, 정민석, 정선희, 정세미, 정은경, 정은혜, 정재원, 정정희, 정정희, 정지연, 정지원, 정진아, 정창수, 정하나, 정현주, 정혜림, 정효영, 조보라, 조서영, 조영래, 조윤기, 조종신, 조현아, 주혜범, 주혜정, 진보영, 천샘, 최강현, 최성희, 최수연, 최영주, 최예지, 최유리, 최유림, 최윤미, 최익진, 최정림, 최정임, 최훈, 추지영, 표아림, 하상연,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예림, 허민숙, 허복옥, 허정수, 허정민, 허제량, 허지선, 홍난영, 홍상희, 홍지수, 홍지안, 홍혜순, 황동하, 황상필, 황예림, 황은순(이상 280명)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단, 강대일, 강병득,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고재영, 국제존타서울클럽, 김경현, 김명륜, 김민정, 김연경, 김유열, 김윤일, 김희라, 김희정, 남우석, 노길룡, 노다운, 목동 명성교회 청년부, 문상철, 미씨유럽, 박성환, 박수진, 박용순, 박인필, 박정은, 박중훈, 박진우, 변혜정, 복인혜, 송미현, 안백린, 안현진, 양채원, 오주현, 원미진, 위밋업스포츠, 유정화, 윤지원,

이문희, 이상화, 이영희, 이우정, 이현상, 임나영, 임다현, 임미화, 임초롱, 장정수, 장철우, 전현지, 정다희, 천수빈, 최수진, 최진주, 추미애, 하동호, 한전부녀회(이상 59명)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님들, 감사합니다.

(주)문학동네, 靑子, 6기타로상담아카데미, Haejung Lee, Jin_play_acting, LEE JUN, Mu:se, stephanie soo, UK Online Giving Foundation, 강동희, 강미영, 강민석, 강상목, 강수지, 강은혜, 강주희, 강현민, 고민락, 고보미, 고보민, 고현덕, 구신희, 국제존타서울클럽, 권기정(기록장), 권나영, 권다혜, 권범준, 권소연, 권수현, 권수혜, 권아름, 권용욱, 권혁주, 권혜주, 기은조, 김결휘, 김귀염, 김나연, 김다니엘, 김다원, 김다인, 김다해, 김단비, 김담이, 김도연, 김도연, 김두나, 김두영, 김명지, 김명환, 김문수, 김문주, 김미리, 김민아, 김민정, 김민환, 김보령, 김부름, 김비한, 김빛, 김상엽, 김선희, 김선희, 김성민, 김성자, 김성태, 김소연, 김수민, 김수용, 김숙경, 김승도, 김승환, 김시우, 김양희, 김여경, 김연미, 김영경, 김예인, 김예인 (힐내세우 늘기도하겠습니다), 김용섭, 김윤경, 김윤별, 김윤희, 김은경, 김은정, 김은지, 김의석, 김인영, 김재은, 김재희(서초여성축구단), 김정원, 김정자, 김정현,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은, 김주은, 김주희, 김준, 김준우, 김준현, 김지민, 김지수,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김지은, 김지현, 김차련, 김찬미, 김철오, 김철희, 김태경, 김태리, 김하나, 김하영, 김현아, 김현우, 김현정, 김현지, 김혜경, 김혜민, 김혜숙, 김혜인, 김화영, 김효주, 김효중, 김희경, 김희라, 김희옥, 나성호, 남정우, 노경미, 노보훈, 노태운, 류가희, 류지현, 마한얼, 메뚜기, 문광현, 문상철, 문지은, 민나영, 민보현, 민영신, 민윤정, 민정원, 민지현, 밀양아지매클럽, 박나리, 박다운, 박빛나, 박상선, 박선, 박선은, 박선은, 박성민, 박솔비, 박수지, 박수현, 박시은, 박아름, 박예림, 박유진, 박은제, 박이은, 박정미, 박정원, 박재연, 박주원, 박준호, 박지수, 박지연, 박지혜, 박진우, 박진우, 박현영, 박희수, 밤비보호자(밤보), 배병준, 배선우, 배은정, 배정민, 배지현, 백미경, 백영경, 백지윤, 법률사무소 HY, 벨, 보이넥스트도어 이한, 삼성에이플러스 주식회사, 새우새우와플랑크톤일동, 서나은, 서다희, 서명옥, 서상호, 서순신, 서원희, 서유진, 서정화, 서지형, 석민재, 석지은, 설혜, 소현지, 손미애, 손보민, 손승범, 손아윤, 손의진, 손정민, 손지아, 송선우, 송용진, 송인호(어스모어), 송정은, 송정현, 송정현, 송주희, 송지수, 송진호, 송재현, 스포링북스, 신가민, 신민경, 신승원, 신시연, 신윤희, 신재솔, 신재영, 신현선, 신혜연, 심소현, 심현지, 안혜신, 양세영, 양정은, 양주희, 양준성, 양준영, 양현지, 엄가을, 엄인선, 연수진, 오가은, 오세련, 오우정, 오유경, 오윤미, 오정민, 오지원, 오지현, 오하영, 오혜은, 오현희, 양세박, 우수민, 우윤지, 윤현극희, 원다솔, 위밋업스포츠, 유수연, 유연주, 유지호, 유혜리, 육경서, 윤가은, 윤경원, 윤문희, 윤신혜, 윤영조, 윤예지, 윤정원, 윤지현, 윤지현, 윤현수, 윤현주, 윤형준, 윤홍균, 이가람, 이가진, 이가현, 이경목, 이고경, 이나은, 이동이, 이동화, 이미경, 이미림, 이민재, 이병덕, 이보솔, 이새날, 이성균, 이성은, 이성희, 이순희, 이승연, 이승은, 이승주, 이아연, 이어진, 이연수, 이영후, 이예솔, 이예지, 이예지, 이월우,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은아, 이은아, 이은재, 이은정, 이이미, 이재은, 이정민, 이정은, 이제인, 이주현, 이지수, 이지우, 이지현, 이지현, 이진웅, 이채연, 이채완, 이학인, 이현, 이현미, 이현성, 이현주, 이형우, 이형찬, 이화정, 이효숙, 이희영, 인진완, 임고은, 임다현, 임대륜, 임동연, 임수정, 임수정, 임자은, 임찬, 임희경, 장경임, 장서연, 장서연, 장예지, 장유정과 조민정, 장은별, 장은주, 장정은, 장지원, 장지은, 장현민, 전가람과조민정,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미소, 전서영, 전재홍, 전화연, 전효진, 정경아, 정기자, 정다혜, 정두환, 정래승, 정민기, 정병문, 정성배, 정수빈, 정연, 정유민, 정유진, 정준모, 정지예, 정지원, 정찬우, 정충덕, 정혜인, 정혜선, 조민영, 조민정, 조민정, 조수영, 조수진, 조영선, 조유시, 조윤지, 조인화, 조일래, 조종신, 조희수, 주소림, 주연경, 진나연, 진명서, 진선정, 진양숙, 진지홍, 차영은, 채원희, 최린, 최선영, 최선희, 최수민, 최영순, 최예나, 최예지, 최윤서, 최윤아, 최정윤, 최지영, 최혜린, 최혜원, 추인영, 치유심리전문가그룹 상담센터, 표선희, 하승연, 한미소, 한소예, 한승민, 한승연, 한승훈, 한유정, 한우규, 한재원, 한정석, 한준희, 해작, 허윤민, 허정민, 허찬무, 현달결, 현자민, 홍순일, 홍예린, 홍주연, 황미연, 황지애, 황재연(이상 448명)

밀양 성폭력사건 피해자 생계비 모금에 힘을 보내주시는 3,142명의 후원자님들, 감사합니다.

흔흔한 기부

모두의 부업 님의 달콤하고 촉촉한 각종 비건 케이크
 김미진 님의 바삭바삭 호두타르트와 향긋한 커피 원두
 윤가은 님의 영화 대박 기원 휘낭시에 한 박스
 한미래 님의 피로가 싸악 가시는 비타오백 제로
 내담자 님의 향긋촉촉 바디워시와 바디크림
 지리산 님의 따뜻한 햇살과 해풍을 머금은 제주명품과일과 대저토마토 가득
 이보라 님의 당충전에 제격인 호두과자
 한재윤, 권김현영 님의 상담소 생일 기념 수제 치즈케이크
 내담자 님의 활동가 몸보신을 위한 공진액 가득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학생 두 분의 야근에 필수인 피로회복제 한 박스
 뉴스핌 방보경 기자님의 시원한 과일주스
 이은심 변호사님의 동글동글 예쁘고 달콤한 체리 한 팩
 신림동 공원 성폭력사건 조력자 현혜경 님의 출출할 때 먹기 좋은 심원빵과 오백원빵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님의 동료애가 담긴 조각 케이크 여러개
 안희정 위력성폭력사건 조력자 신용우 님의 과즙 가득한 사인머스켓과 복숭아
 집단상담 참여자님의 사위도우가 유명한 베이커리의 각종 빵
 도명화 님의 폭신폭신타 달콤한 케이크 한 판
 별의친구들 님의 경계선 청년들이 꿈과 함께 구워낸 수제 쿠키
 경찰청장 님의 한가위 맛이 건나를 활박웃음세트
 정명화 변호사님의 풍요로운 추석을 바라는 칠갑산 구기자 한과 가득
 내담자 님의 마음 따뜻해지는 과일주스
 감나무집 어르신들의 목직하고 속이 꽉찬 시원한 배 한 박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님의 껌소한 참기름과 들기름 세트
 꿈누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님의 밥도둑 광천김 세트
 내담자 님의 정신 번쩍 드는 상큼한 피로회복제 한 박스
 자원활동가 재현 님의 먹는 순간 행복해지는 레몬파운드케이크와 크래커 2종
 이효숙 님의 열린터 30주년 축하 더치커피 네 병과 커피 원두
 도우리 님의 두근두근 열린터 홈커밍데이를 위한 기정떡 두 상자와 머랭쿠키 가득
 서수빈 배우 님의 꽃길을 응원하는 떡케이크
 윤영 님의 쫄깃쫄깃 파배기
 395빵집 님의 정성가득 고소한 빵 한 꾸러미
 박선희 님의 상담소를 떠올리며 보내주시는 강정평화상단 굴 한 박스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김수 교수님의 합정동에서서 유명한 호두과자 두 박스
 내담자 님의 애정이 듬뿍 담긴 초코버터쿠키
 해달 님의 제15회 생존자말하기대회 소식을 환영하는 굴 한 박스
 내담자 님의 지구에도 나에게도 좋은 친환경 생필품 세트
 백주년기념교회 님의 언제 먹어도 든든한 호박설기 가득
 강영 회원님의 사려깊은 비건 크래커와 초콜릿 선물 상자
 김성자 회원님의 아삭아삭 새콤달콤한 사과 한 박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님의 달콤고소 부드러운 호두과자 두 박스
 마도 님의 상큼한 과즙이 팡팡 굴 한 박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추지현 교수님의 자꾸자꾸 손이 가는 제주 무농약 굴 한 박스
 정신분석센터 판도 홍선희 님의 향긋하고 아삭한 사과 한 박스
 칼리 님의 하루만에 똑딱 해치운 맛난 굴 한 박스
 생활인 조력자님의 생활인과 열린터의 창창한 앞길을 지원하는 피로회복제 한 박스

2024
나눔터

퍼넌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제94호

퍼넌이
김혜정

퍼넌날
2025년 2월 10일

만든이
박수민

디자인
6699프레스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사무 전화
02-338-2890~1

상담 전화
02-338-5801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 | | |
|-----------------------------------|-----|-----|
| 여는 글 | | 4 |
| 기획: 30 | | |
| 성폭력특별법이 해온 것과 가야할 길 | 이미경 | 8 |
| '보편'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폭력특별법 30년 이후의 과제 | 김혜정 | 16 |
| '또같이'를 시작하며 | 신아 | 24 |
| 된다! 상담소 | | 29 |
| 2024 상담통계 | | 44 |
| 열린터 다이어리 | | |
| N개의 자립 | 유유 | 50 |
| 생존자의 목소리 | | |
| 희생당하지 않는 사랑의 나라 | 공차 | 54 |
| 무제 | 결 | 60 |
| 생존자 권리가 전하는 편지 | 김지은 | 62 |
| 특별 코너 | | |
| 제15회 생존자말하기대회 (발표) 현장 스케치 | | 66 |
| 쟁점과 입장 | | |
| 딥페이크 성폭력이 그다지 새롭지 않은 이유 | 유랑 | 72 |
| 남성성"을"해낸터 테러리즘 | 추지현 | 78 |
| 연대활동 소식 | | |
| 나, 너, 우리 모두의 사랑이 이길 때까지 | 도경 | 84 |
| 본편보다 재미있는 | | |
| 곳곳의 페미니스트 상담소의를 권하며 | 수수 | 92 |
| 활동가 인생다큐 | | |
| 안식년과 복귀 후 새로운 팀에서의 1년 | 앞 | 98 |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 104 |
| 훈훈한 기부 | | 110 |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ISSN 3058-9959
비매품

